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과 개선 방안  
- 제1기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 순 안

2009년 8월

#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과 개선방안

- 제1기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 전

현 순 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현순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8월

## <국문 초록>

###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과 개선 방안 - 제1기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 현 순 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 지도교수 고 전

본 연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 희망이 넘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수준의 우수한 모델 학교로 창출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원어민 교사의 확대 배치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 실시했던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첫째, 학교자율화 정책의 논거와 자율학교의 유형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도입 배경과 법제적 기초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특례, 특성화 프로그램 측면, 성과지표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자율성 및 특례 적용 범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쟁점과 교육과정, 재정 및 평가에 대한 운영적 측면에서의 쟁점, 그 밖의 지원체제에 대해 문헌 분석의 방법과 문헌의 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근무 교원 중 면담 대상자를 선정한 면담조사로 실시하여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 자율성 보장 및 특례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둘째,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재정 편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통한 운영적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학교장 인사 자율권, 교원 연수 강화, 및 학교 시설정비를 포함하는 지원체제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장기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자기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예산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형 자율학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진정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3. 개념 정의 .....	4

##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자율화 정책의 논거 .....	5
가. 자율학교 정책의 도입 배경 .....	5
나. 자율학교 정책의 지식 기반 .....	8
다. 자율학교의 법적 기반 .....	12
2. 자율학교의 유형 .....	17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자율학교 .....	17
나.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 .....	20
다. 대안학교 .....	21
3.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22
가. 미국의 차터스쿨 .....	22
나. 영국의 아카데미스쿨 .....	24
4. 선행연구 분석 .....	26

## III.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

1. 지정 배경 및 경과 .....	29
가. 지정 배경 .....	29
나. 정책추진 경과 .....	31
2.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제적 기초 .....	32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2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33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	34
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 .....	35

<b>3.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b> .....	<b>37</b>
가. 학교현장의 제정 .....	37
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상의 특례 .....	39
다. 특성화 프로그램 .....	50
라. 자율학교 지정 절차 .....	53
마.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협약 체결 .....	54
<b>IV. 제주형 자율학교의 쟁점 및 개선 방안</b>	
<b>1. 법제적 측면</b> .....	<b>61</b>
가. 학교 자율성 관련 규정 .....	61
나. 특례 적용 범위 관련 규정 .....	63
<b>2. 운영적 측면</b> .....	<b>65</b>
가. 교육과정 운영 .....	65
나. 재정 운영 .....	67
다. 자율학교 운영 평가 .....	70
<b>3. 지원체제 측면</b> .....	<b>71</b>
가. 교장의 인사 자율권 확대 .....	71
나. 교사 연수의 강화 .....	73
다. 학교 시설의 정비 .....	75
<b>V. 요약 및 결론</b>	
<b>1. 요약</b> .....	<b>76</b>
<b>2. 결론</b> .....	<b>77</b>
<참고문헌> .....	79
<Abstract> .....	81
<부    록> .....	83

## 표 목 차

<표 I-1> 면담자 현황 .....	3
<표 I-2> 면담질문의 영역 별 하위변인 .....	4
<표 II-1>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 .....	8
<표 II-2>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 .....	9
<표 II-3> 일반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 .....	13
<표 II-4> 학교급별 · 종류별 자율학교 현황 .....	17
<표 II-5>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 비교 .....	19
<표 II-6> 관련법상 자율학교의 비교 .....	19
<표 II-7> 자율학교와 차터스쿨의 비교 .....	23
<표 III-1> 도시개발지역 과대학교 현황 .....	29
<표 III-2> 도심 소규모 공동화 학교 현황 .....	29
<표 III-3>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	37
<표 III-4> 학교현장에 명시된 내용 .....	38
<표 III-5> 광령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	41
<표 III-6> 광양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	43
<표 III-7> 대흥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	45
<표 III-8> 서귀포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	47
<표 III-9> 제주북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	49
<표 III-10>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현황 .....	50
<표 III-1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외국어교육 현황 .....	51
<표 III-12>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독서 · 논술교육 현황 .....	51
<표 III-13>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예체능교육 현황 .....	52
<표 III-14>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	52
<표 III-15>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기타 교육활동 현황 .....	53
<표 III-16> 성과협약서 내용 .....	55
<표 III-17> 전체평가분야(학교자체평가 예시) .....	58
<표 III-18> 종합평가 기준 .....	59
<표 III-19>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질문 내용 .....	59
<표 III-20> 교직원 대상 질문 내용 .....	60
<표 III-21> 학교별 학생 · 학부모 · 학부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전반 만족도 .....	60
<표 IV-1> 특별법령상 학교장에서 부여된 자율권 .....	63
<표 IV-2> 법규정의 자율성과 실제 행사하는 자율성의 비교 .....	64

## 그 립 목 차

[그림 II-1]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SBM)의 개념 .....	11
[그림 III-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절차 .....	54
[그림 III-2] 평가지표 구조 모형 .....	56
[그림 III-3]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목표 .....	5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학교교육의 개혁과 교육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위한 경쟁을 매우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서의 우리의 삶과 교육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로 다양화와 특성화, 폭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대비를 위한 국가 간 경쟁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초·중등 교육의 개혁을 비교 우위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초·중등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개혁은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우수한 초·중등 학생의 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학교 교육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우수 교원 양성, 학교재정 제도 개선, 학교선택권 확대, 의사결정 구조 개편, 학부모 참여 제도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개혁 추진 방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행 공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초·중등 학교교육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으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었다.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에서 단위학교에 이르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교육행정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 확대에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지역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한국에서는 교육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추구하며,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심각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교육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SBM(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 : School-Based Management ; SBM)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초·중등학교 정책의 대표적인 제도인 자율학교를 1999년 3월 이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수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설립에 있어서 확대일로에 있는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학교 운영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학교와는 달리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각 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무성도 지녀야 하고 자율학교의 지정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자율학교가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재지정 절차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해 자율학교가 학교현장을 실천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학교 현장 실천과 수요자의 욕구충족 정도에 따라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자율학교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학교 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분권화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자율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운영 주체가 스스로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이다. 한편으로는 한 국가의 교육행정 운영 체제, 통제 방식, 그리고 권한의 위임 범위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을 지향하는 학교 모형은 “self-managing school”, “self-governing school”, “regulation free school”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후 2006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기존 자율학교보다 특별법위가 확대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장 임용 등에 대해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학교로 혁신적인 학교형태이다.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의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기 시범대상학교를 2007년부터 2년 간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 희망이 넘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수준의 우수한 모델 학교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창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시행초기 운영계획에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및 인구 분산과 농촌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도심지 공동화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선정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게 하였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원어민 교사의 확대 배치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 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31조에 의해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자율화 정책의 논거와 유형 및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도입 배경 및 경과와 특징은 어떠한가?
- 셋째, 학교 자율성 및 특례 적용 범위의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 넷째, 교육과정, 재정 및 자율학교 평가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 다섯째,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체제 측면에서의 보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 연구의 방법

### 가.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장 임용 등에 대해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되어 제주도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과 자율학교의 유형,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도교육청의 내부분서, 주요 업무 계획, 각종 법령을 취합 분석하였다. 또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종합평가까지 완료한 5개 초등학교의 200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제주형 자율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편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학교현장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 나. 면담 조사

제주형 자율학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2008년 9월 모든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생·학부모·근무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던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 조사와 성과지표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의 보고서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근무교원 중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제주형 자율학교 시행 초기부터 근무하고 있는 부장 교사 4명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던 교사 3명, 총 7명이다(<표 I-1>).

면담은 사전 허락과 약속에 따라 직접 방문한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로 하였으며, 2009년 3월 23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선방안을 위한 근무 교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질문은 법적 측면, 운영적 측면의 두개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하위변인의 내용은 <표 I-2>와 같다.

<표 I-1> 면담자 현황

면담자	면담자 직책	연령대
A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실무 담당 부장(가학교)	40대
B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실무 담당 부장(나학교)	40대
C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실무 담당 부장(다학교)	40대
D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부장(라학교)	30대
E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원어민 담당 교사(다학교)	30대
F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사(마학교)	30대
G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사(가학교)	20대

<표 I -2> 면담질문의 영역 별 하위변인

영역		면담질문 하위변인
법제적 측면	관련 규정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특례 적용	특례 적용 정도
운영적 측면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
	재정 운영	교육청의 지도·감독 정도
		학교장의 책임
근무 교원	합리적인 교내 인사 및 연수	
	업무 및 수업 부담 정도	

### 3. 개념 정의

제주형 자율학교란 특별법 제 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학교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새로운 학교 제도로 제주도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대폭 위임한 자율학교를 의미한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일명 'i-좋은 학교'로 명명하는데 우리말에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나"가 좋은 학교, 감탄사 "아이 !" 좋은 학교라는 의미와 국제적인(international) 학교, 재미있게(interesting) 공부하는 학교, 상상력이 풍부한(imaginative) 학생들의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위원회가 2008 의정연수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예방하고 서귀포초등학교와 남원중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를 둘러본 뒤 모델로 도입하여(인천교육.08.06.02) 시범운영하는 인천형 자율학교는 논술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교수학습평가, 안전교육,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과제로 다른 개념을 갖는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자율화 정책의 논거

#### 가. 자율학교 정책의 도입 배경

##### 1) 시대 변화 반영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에서 우선 살펴볼 점은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 측면이다.

임연기(1999:13)는 지금까지의 학교가 주로 전통적인 학문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산업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직업사회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학교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다가오는 시대에 적합한 자기주도적인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교육평가방법 역시 다양하게 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종태(2000:7-8)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확립된 공교육제도는 국민대다수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진단하고, 그러한 한계가 뚜렷이 가시화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다양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기존의 경직된 교육체제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국가적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공교육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게 된다.

1991년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1990년대 중반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교단위 책임 운영제의 시행이 제안되는 등 중앙집권적 교육통치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었다(김민조, 2003:18-20).

단위학교 자율성에 관한 논의 전개 과정이 공식화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모형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제안하였으나, 관료주의적 행정체계에 의하여 여전히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0년 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언적 수준으로만 제기되었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되고 그 구체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행한 보고업무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정부 이후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현재에 까지 교육제도 운영의 기조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 2)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추구

자율학교 제도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본래 이 제도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가 발안한 것(이종태, 2000:7)으로 1995년 당시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이 자율정책의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5·31 교육개혁안을 보면,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신교육체제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와 기존 교육행정 체제 개편의 논의는 1990년대 중반 5.31.교육개혁 방안 추진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5.31교육개혁 방안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정책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단위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율학교 모형의 시발이 되는 정책제안은 1996년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탈규제 학교(regulation-freeschool)"의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 새로운 학교모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교육부는 지시와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 및 법령 체계를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것이 학교 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령 체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은 포괄적인 성격의 지도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도 및 감독 권한 중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르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특별히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학교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방식 대신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운영의 특례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탈규제학교 운영 계획은 1997년에 이르러 당시 교육개혁 추진의 하나로 교육관련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자 종래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개편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반영되었다. 이는 이후 1998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될 때에는 탈규제학교의 명칭 대신 자율학교의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특례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끝 부분에 보칙의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실험적·한시적 성격과 전반적인 교육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하는 듯 한 정책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998 2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고 여기에 '자율학교'가 공식적인 용어로 등장한 이후 이 해 8월에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자율학교 시범운영(안)은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 61조의 내용을 전부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정 대상 학교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권장사항으로 학교헌장을 제정·공포하게 하였으며, 시범운영 학교에 매년 3천만 원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교사에게는 월 0.112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운영(안)은 이후 상당히 조정, 축소되었다. 교감의 자격은 종전처럼 유자격자

로 하였으며, 학년도와 수업연한, 학년제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또 시범학교 지정 대상도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제외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자율학교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나 공문서 보고의무 면제 계획도 백지화되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가 1998년 8월에 발표한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계획은 처음 발상 단계에서 보인 완전 탈규제학교와는 달리 상당히 신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기존의 교육행정의 지도 및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학교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자칫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최초 시행 시기에 시범 운영의 대상학교를 특성화 학교 및 예·체능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제한하여 시행하였다. 초기 자율학교 제도는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는 데, 최초 14개 학교를 지정한 자율학교는 2000년도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2001년에는 통합형 고등학교 5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체 20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3년간의 자율학교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2001, 이종태 외)를 의뢰하여 시범운영 종합평가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시범 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학교 제도 개선 방안을 2001.12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의하여,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율학교의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있지만, 평준화 실시 지역의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단서 조항으로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시·도교육감의 자율학교 확대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자율학교 지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 자율학교 운영 유형은 다양화되고, 대상학교 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 3. 현재, 일반학교 중에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 및 통합형 중·고등학교 117개교, 직업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60개교, 특수목적예체능 중·고등학교 19개교,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자율학교 1개교, 교육감 인정 자율학교 24개교, 그리고 교장 초빙 공모제 관련 자율학교 42개교(초등학교 15개교) 등을 포함하여 전체 263개교가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현황’, 2008.6.24).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를 교육 체제, 교육행정, 단위학교 운영, 학생·학부모 교육 요구 등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 <표II-1>과 같다.



<표Ⅱ-1> 자율학교 정책의 배경 및 과제

영역	추진배경	세부과제
교육 체제	정보화·세계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 교육 통치구조 변화 필요성	학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교육행정	규제 위주 관료 행정 심화	현장 중심 지원 행정 실현
단위학교 운영	학교 교육의 획일성·경직성 심화	학교의 자율적 운영 학교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학생·학부모 교육 요구	다양한 교육 요구 증대 평준화 정책 보완	학생 중심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 나. 자율학교 정책의 지식 기반

### 1) 단위학교 자율성

단위학교 자율성은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에 따른 학교 운영의 획일화를 반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율성(autonomy)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무엇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율성이란 국가, 기관, 개인의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자율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통제하며, 실천하는 등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용구, 2005:19; 이진철, 2008:16).

신재철 등(2003)은 학교 자율성을 정의하기 전에 자율성의 개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율성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스스로 통제한다는 말은 인간의 행동은 사회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을 조직에 적용하면 조직의 자율성이란 '어떤 조직이 외부의 구속이나 압력에서 벗어나 이성이나 사물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판단·결정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이란 단위학교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결정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기관의 자율성으로서 단위학교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자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가지는 자유와 자주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장학 면에서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학습의 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입시·선발·생활지도 등의 방법 면에서, 또는 제반 행정, 관리 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적, 자주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들이 기관의 자율성과 관련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학교 조직의 구성원들 특히 교사들이나 다른 직원들 및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주와 자율의 정도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기관의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으나 학교의 조직 풍토, 학교장의 지도성,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입 및

집단으로서의 자율성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성의 유지 능력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단위학교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교가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교육행정 기관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변화의 단위와 더불어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점은 변화의 내용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한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단위학교의 변화에 있고, 단위학교가 변화해야만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능동적인 변화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체제 자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윤정일, 2004:1~3).

이진철(2008)은 단위학교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을 다음 <표Ⅱ-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2>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통해 추구하는 변화상

영역	추구하는 변화상
학교 운영 측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의사결정 구조 혁신)
	교육청의 간섭·통제 배제
	합리적인 교내 인사
	재정운영의 자율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
	자체 평가 체제 운영
	교육활동의 전문화
교육 내용 측면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학생 요구 수렴

## 2)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School-Based Management : SBM)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School-Based Management 이하 SBM)는 교사위원회운동, 민주적 행정 운동, 지역사회 통제운동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외국의 학교 개혁의 경향이자 모델이론이다. SBM은 1970년대 미국에서 지역사회에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증가된 주정부의 권한과 학교 재정의 공평성추구로 인한 재정의 중앙집권적 교육개혁으로 SBM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1980년 중반 이후 학교재구조화 논의를 기점으로 학교의 효율성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SBM은 주정부는 학교 책무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 노조는 교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는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SBM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고 실제로 매우 다양하지만 그 기본

철학은 '일선학교의 자율성 강조'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강조'로 일치하고 있다(진동섭, 2004).

SBM의 핵심은 권한의 분권화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 및 교육청이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것이다. SBM의 구체적인 모습은 단위학교로의 분권화 영역 및 단위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권한 재배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권화의 영역은 학교재정 측면, 교원인사 측면, 교육과정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로 분권화된 권한을 누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적 통제유형, 전문적 통제유형, 지역사회 통제유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Hanson, 1991:9~19 ; Wohlstetter 와 Odden, 1992:533~35 ; Murphy 와 Beck, 1995:41~46 ; 이진철,2007:23).

행정적 통제유형은 단위학교로 분권화된 권한을 학교장이 가지는 형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자이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체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위원회나 자문회 등이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성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구로 한정되기 때문에 학교장은 위원회의 논의에 거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전문적 통제유형은 권한의 위임·이양이 교사에게 이뤄지는 형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구성원 특히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단위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교사이고 단위학교에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교사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지역사회 통제유형은 단위학교로 분권화된 권한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비전문가들이 가지는 형태로 전문적 통제 모형과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교구성원들의 의사 결정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 단위학교 주요 의사 결정자는 비전문가들로,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법령상 학교장 중심 책임운영체와 공동체 중심 책임운영체<sup>1)</sup>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조(2003:18~20)는 SBM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지향하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재정,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분권화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재정 측면에서 단위학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초빙제의 확대 실시, 순환근무제의 유연화 등 단위학교 차원에서 인사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최소한의 국가 기준만을 설정함으로써 단위학교가 자신들의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야 하고, 교과서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SBM은 단위학교에 얼마나 많은 권한의 위임과 이양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과

1) 공동체 중심 책임운영체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모두를 학교의 운영 주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학교 간에 적절한 수준과 내용으로 권한의 배분이 이뤄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진철(2008)은 단위학교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행정적 통제 모형, 전문적 통제 모형, 지역사회 통제 모형 등 몇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행정적 통제 모형은 학교장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을 의미하며, 전문적 통제 모형은 학교장과 교사가 함께 하는 모형과 교사 주도 모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통제 모형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주도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II-1]은 SBM의 핵심개념을 분권화의 영역, 분권화 수준, 의사결정 주도 모형을 준거로 정리했다.



[그림 II-1]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SBM)의 개념

### 3) 학교공동체론

학교공동체론은 학교에 관한 기존의 관점들, 예컨대 조직 이론과 관료제 이론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대두되었다. 사회적으로 1990년대를 전후로 현대사회의 관료화, 기계화와 그에 따른 학교에서의 소외 현상, 학교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저하 등이 '공교육 붕괴' 혹은 '학교교육의 위기'라는 말로 자주 언급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이진철, 2008).

Sergiovanni(1994)는 공동체를 자유의지에 의해 결합되고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계속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며, 공동체의 형태를 전문 공동체, 탐구적 공동체, 리더 공동체, 민주적 공동체로 유형화 하였다. 그리고 학교공동체의 형태를 전문 공동체로서의 학교, 학습자 공동체로서의 학교, 리더 공동체로서의 학교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전문 공동체로서의 학교란 학교에서의 공동체 규범은 교직의 전문적 규범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한다. 교직에 있어서 전문적 이상은 '수업에 대한 헌신', '가치 있는 사회 목적에 대한 헌신', '돌봄의 윤리에 대한 헌신', '자신의 수업과 교직 자체에



대한 헌신'으로 구성된다. 학습자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교사들이 함께 탐구할 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탐구는 학교 내에서 학년과 전공 교과목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탐구는 교사들 간에 토론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탐구는 동료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조장한다. 즉, 탐구는 교장과 교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이른바 학습자 공동체를 구축하게 된다. 리더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리더십이 구성원 모두에 의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십은 사람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화 의지, 원칙과 열정, 시간과 재능, 목적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건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으로서의 리더십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으로 재정의 된다(이종재,2004; 이진철,2008:28).

학교공동체론을 통한 시사점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상급 교육기관이나 학교장 1인에 의해 목표와 가치, 규범이 결정되고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은 수직적 위계에 따라 복종하는 체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가치, 규범, 신념 등을 함께 공유하고 동시에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반될 때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교공동체론에 따르면 교장의 지도성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헌신, 소속감, 정체성 등이 강조되며 친밀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공식적, 위계적 권위에 의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효용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공동체론은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교육의 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공동체론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전체 학교공동체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규정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진동섭,2004; 이진철,2008:29).

## 다. 자율학교의 법적 기반

### 1). 초·중등교육법<sup>2)</sup>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는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하여 기존 학교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제도에 대한 예외적 적용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1조제1항(교장, 교감, 원장, 원감의 자격), 제24조제1항(학년도 개시와 종료), 제26조제1항(학년제에 의한 진급과 졸업), 제29조제1항(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의 사용),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9조(초등학교의 수업연한), 제42조(중학교의 수업연한), 제46조(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의 규

2)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7호

정은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용받지 않고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표II-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p>제61조 제1항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p> <p>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 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1조 제1항 (교원의 자격)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의 자격 제24조 제1항 (수업등) 학년도 개시와 종료 제26조 제1항 (학년제) 학년제에 의한 진급과 졸업 제29조 제1항 (교과용도서의 사용)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사용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9조, 제42조, 제46조 (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 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p>
--

<표II-3> 일반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

	일반학교	자율학교	
성격	일반학교	탈규제 자율 운영 학교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추구 대안교육 요구 수렴	
운영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예외	탈규제 학교
교육과정 교과서	국가 교육과정 운영 국·검인정도서 사용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 교과용도서 사용 자율	교육내용의 다양화·특성화
교원 인사	현행 인사 제도 적용	미자격자 교장 임용 가능 교사 자격 필요 산학 겸임 및 강사 활용	탈규제 학교
재정	총액 도급제(공립) 국고지원 (사립)	기존 학교와 동일	재정 형평성 유지
학교 현장	없음	현장 제정 공개	탈규제학교

※출처 :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2006.10.11.)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sup>3)</sup>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서는 자율학교의 지정의 대상학교의 사유에 대해 예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동규정의 자율학교 지정 대상 학교의 유형에는 그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자율학교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규정에는 지정 대상학교의 범위가 개방적으로 되어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 개방형 자율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운영도 동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05조 제1항 (학교운영의 특례), 제105조 제2항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의 규정 및 부칙 <제1739호, 2001.10.20>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 공고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었다.

### 제105조 제1항 (학교운영의 특례)

-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4.2.17>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⑤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 ⑦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제정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4호 이후 25회 개정됨: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제105조 제2항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라. 제10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예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칙<sup>4)</sup> <제17390호, 2001.10.20>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82호, 2004.2.17>

③ (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4) 본조신설 2007.4.12

### 3) 기타 조례 및 학교 내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sup>5)</sup> 제10조에는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sup>6)</sup> 제2조에는 징수금액 관련 자율학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외에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징수금액)

2.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학교의 장이 정한다.

5) 제정 2004.9.22 대통령령 제18549호 이후 8회 개정 :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

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 2008.11.13,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02-2100-6365

## 2. 자율학교의 유형

자율학교의 유형에 대해 오영세(2002)는 지정권자에 따른 유형으로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대안학교를 들었다. 최금진·배장오(2003:255-257)의 경우 자율학교는 모든 유형의 학교 중에서 운영방식의 특례를 인정받은 학교로 크게 특성화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농어촌계 고등학교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시 직업교육분야와 대안교육분야로 나누었다. 교육부(2004)는 위와 같은 유형에 통합형고등학교를 추가하였고 2005년에는 학습 부진아등 교육학교, 열린교육·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학교, 특성화학교, 교육감인정학교(예체능·통합형·농어촌소재·기타)로, 2008년에는 2005년 교육부 유형에 교장 초빙공모제 관련 자율학교 지정교를 추가하였다.

<표Ⅱ-4> 학교급별·종류별 자율학교 현황

(’08.9 현재)

구 분	교육감 지정								교과부 시범운영		합계
	학 습 부 진	열린교육/ 수준별 교육	특성화 중·고	기타 교육감 인정				자립 형사 립고	개방 형자율		
				예체능	통합형	농어촌	기타			교장공모	
고	-	2교	52교	18교	7교	111교	16교	10교	6교	10교	232교 (국3/공147/ 사82)
중	-	-	7교	-	-	5교	-	16교	-	-	28교 (공16/사12)
초	-	-	-	-	-	-	-	22교	-	-	22교 (공22)
합 계	-	2교	59교	18교	7교	116교	16교	48교	6교	10교	282교 (국3/공185/ 사94)

※ 출처 : 교과부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 자료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정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장관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2005년 7월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을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05. 7. 2).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중산층 이하의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중앙일보, 2005. 12. 28). 2006년 공영형 자율학교의 명칭이 개방형 자율학교로 바뀌면서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 지나친 사교육의 존, 무기력한 공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단위학교의 자발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육부(2006)는 시행 첫해인 2007년도에 운영되는 시범학교로 2006.10.16 최종 4개 학교를 확정 발표하였다<sup>7)</sup>. 이는 당초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발표 때 제시한 전체 5~10개 정도의 목표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자율학교 확대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07년 3월~2011년 2월까지 4년이며, 2010년도에 시범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과 일반학교에 대한 적극 확대를 검토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부여하는 자율성 정도보다 확대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단위학교의 개방적,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단위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은 공모 및 초빙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순환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의 법령 체계는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정의 정의, 운영주체, 자율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교육과정의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법령의 내용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다만, 한국 교육행정 체계의 중앙집권적 성격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하여 놓은 구체적 기준에 따라 학교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사의 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국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라는 행정 지침을 고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국가 중심 교육과정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하여 자율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 자율적인 권한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학교의 독특한 설립목적과 단위학교에 학교 운영의 대폭적인 권한 부여를 목표로 제도화 한 학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공통 교육과정 56단위 이수 의무는 매우 소극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제한성은 한국에서 학교 개혁을 위한 모델의 하나로 도입한 자율

7)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신청한 9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서울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지역, 신설학교와 기설학교의 요인을 고려하여 최초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학교로 서울 원목고등학교(2007학년도 신설, 서울시 중랑구 목동), 부산 부산남고등학교(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충북 청원고등학교(2007학년도 신설, 충북 청원군 오창면), 전북 정읍고등학교(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를 지정하였다.



학교 운영 효과를 퇴색시키고, 한편으로는 이들 학교들의 편법적이고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는 이들 학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반학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적 입장은 이들 자율학교들의 학교 운영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김영철,2003).

<표 II-5> 개방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 비교

구분	개방형 자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주체	설립·운영을 분리 : 공모교장 등에 학교운영 위탁	성과협약을 맺은 학교장
운영상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율성	학생 모집 평준화지역 - 학군내 모집, 선지원 후배정 비평준화지역 - 광역자치단체 내로 모집, 협약에 따라 내신, 적성검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모집 (단, 필기고사는 금지)	평준화 원칙 유지하되,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 가능
	교원 인사 단위학교 인사권 확대 : 초빙에 의해 교사 임용	교원 임용·소속 교원 전보유에 요청 가능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 학교 자율 무학년제 운영 가능 수업일수 198일 이상	교육과정 자율운영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조절 가능 국내외 출판 도서 사용 가능
학교현장	학교운영권 위탁 보고서 및 성과협약 내용, 학교현장을 홈페이지에 게시	현장 제정 공개(현장에 따른 학교 운영 보장)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6.12.06)

<표II-6> 관련법상 자율학교의 비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반 학교)	특별법 시행령(제주형 자율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국민공통교과(10과목)의 자율적 조정 운영	자율 운영. 단, 국어, 사회 교과만 국민공통교과 적용
교장, 교감의 자격	자격자 임용	자격 불필요
교과용 도서 사용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국내도서 중 자율적 선택	국내외교과서 자율채택. 단, 국어, 사회 제외
근무교원 수당지급	없 음	특별수당 지급 가능
외국인 교원의 임용	없 음	임용 가능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6.12.06)



## 나.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

교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① 초·중등교육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②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③ 특성화중학교
- ④ 특성화고등학교
- ⑤ 기타 교과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1) 특성화 학교<sup>8)</sup>

입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학생의 소질·적성·특기를 살리는 특화된 교육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특성화한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로서,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교육 분야'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2) 특수목적 학교<sup>9)</sup>(예·체능계 학교)

특수목적 학교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이는 1970년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특별 지원을 통해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1974년 인천해양과 학교등학교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198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의 변화된 산업 환경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가 점차 퇴색되다가 과학 영재교육을 명분으로 한 과학교등학교와 1990년대의 어학 영재교육을 명분으로 한 외국어고등학교들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입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8)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체험위주의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사립특성화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결정(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9) 국가 기간 산업 등 특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특수분야의 전문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음(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9개 계열 129개 고등학교가 있다.

### 3) 농·어촌 자율학교(일반계열, 실업계열)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농·어촌 소재의 일반계열 또는 실업계열 고등학교 가운데 자율학교를 신청하여 지정받은 학교이다.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한 이유는 농·어촌 학교들이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및 교육재정의 배정 방식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 지역의 학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자율학교<sup>10)</sup>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낙후된 교육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율학교로 지정받고 있다.

#### 다. 대안학교

동 법 제 2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6월, 교육부는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내세운 바는 학교교육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힌다는 것이었다. 2003년 8월 16일과 9월 15일자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되었고 마침내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대안학교법'이 통과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 21조 제1항(교원의 자격), 제23조 제2항 제3항(교육과정), 제24조(수업), 제26조(학년제),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및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내지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88개 군(都)에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 (2007 교육부 업무보고) : 실업계고 집중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고교단계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별 소관 정부부처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탁하여 특성화고 100여개를 새로 육성하고,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 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를 위해 생애초기부터 기본학습능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이들 학교는 교장초빙제를 우선 실시, 학생선발·교육과정운영 등에 자율권을 주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운영된다. 한림고등학교가 도내 첫 자율학교 지정('02. 07.10)되어 2006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함.

### 3.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가. 미국의 차터스쿨

##### 1) 운영사례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안들 중에는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s)' 연구,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 연구,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단위학교 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 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적 운동들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미국에서 차터스쿨은 1991년 미네소타 주에서 차터스쿨 법안(Charter School Legislation)이 제정되면서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1992년 미국에서 최초로 차터스쿨이 개교한 이래 2003년 1월까지 36개 주와 콜롬비아 교육구에서 2,700여개의 차터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차터스쿨은 자율성과 책무성에 근거하여 관료화되고 비효율적인 학교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선택권에 근거하여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진동섭, 2004. 이재훈, 2006).

차터스쿨은 교사, 학부모, 기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사적 개인이나 그룹이 학교의 독특한 교육목적 및 달성해야 학생 성취의 기준, 학교의 경영 및 수업, 재정계획 등을 현장의 형태로 제안하고, 교육구나 주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고 운영한다. 차터스쿨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비록 공립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자율적인 독립기관이어서 주 또는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의 개발, 교직원 인사, 예산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법규나 정책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며,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김홍주 외, 2005).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터스쿨은 매우 다양하여 전형적인 차터스쿨 모형을 단일 모형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차터스쿨은 최소한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특정한 현장이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규정(Molnar, 1996)할 수 있으며, 차터스쿨의 운영 근거가 되는 차터스쿨법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Premark, 1996. 이재훈, 2006).

- ① 학교의 설립 및 운영자의 다양성이다. 차터스쿨은 교사, 학부모, 기업체, 지역사회의 조직 등 여러 집단들에 의해 설립·운영될 수 있다.
- ② 현장을 승인하는 권한은 지역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정부, 주 교육위원회,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행사한다.
- ③ 단위학교는 법적 독립성(legal entity)을 가진 기관으로 운영된다.
- ④ 지원 대상, 선발, 종파 및 계층별 차별의 금지, 공평한 재정 운영, 학비의 면제 등 공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들에 충실하게 운영된다.
- ⑤ 현장 또는 계약에 명시한 학교 성과에 책임이 부여된다. 학생이 수행할 학업목표와 평가

방법 등이 현장에 명시되고, 허가기간(통상 5년)이 약정된다. 현장의 갱신은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⑥ 학업성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는 주 또는 지방정부의 제반 법규나 정책으로부터 유예되도록 한다.

⑦ 학생이나 교사는 강제적으로 배정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입학, 재직하게 된다.

⑧ 학교는 교육구로부터 독립되며, 학교 운영 기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재훈(2006)은 자율학교와 차터스쿨의 도입 배경과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표II-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II-7 >자율학교와 차터스쿨의 비교

구분	자율학교	차터스쿨
도입 배경	학교 제도가 지나치게 획일화, 경직화 되었다는 이유로 도입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기회 확대,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학교 개혁 운동의 하나로 학교 선택 권과 관련된 학교 다양화 시도로 도입
학교 현장	건학 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운영, 학생선발 기준, 재정 운용 방안 재정 공개 의무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 16조 계약기간 : 제한 없음 계약기간 종료 후 : 주기적인 평가후 운영 지정 시범운영 해제 여부 결정	수업 계획, 교육성과 및 평가 방법, 경영 관리, 재정 계획 계약기간 : 3-5년 ▪ 계약기간 종료 후 : 평가후 계약 갱신 여부 결정, 기준에 미달시 폐교 혹은 학교경영권 포기
학생 선발	모집단위 : 전국, 지역단위, 전국·지역 병행 가능 방법 : 학교별 선발(시행령 제105조) 학교별 다양한 전형 실시(필기시험 지양), 전형 계획은 교육감 승인	학구 제한 없음 (일부 주 제외) 입학시험 없음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선택
교육과정	자율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제외	학교 설립 시에 교육과정, 교수 방법, 평가 방법, 현장 실천 전략 등을 기재
교원 인사	일반 공립학교에 준함 -교장 : 자격유무 불필요 -교감, 교사 : 자격 필요(산학겸임교사 등은 교원 정원의 1/3 활용 가능)	피고용자, 소유자, 하청계약자 관계 주에 따라 교사 자격 유무
재정 운용	등록금 : 교육감이 정함 재정 결함 보조 가능 학교교육비 집행에 변화 없음	학생 수에 따라 주정부에서 재정 지원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과 못함 재정의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의 자율



## 2) 시사점

차터스쿨은 학력 저하로 대표되는 미국 공교육의 위기 및 관료적 통제에 따른 학교교육의 경직성 극복을 위해 학교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정책 사례이다. 미국의 차터스쿨 정책은 한국의 자율학교 정책 도입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초기 정책연구가들은 미국의 차터스쿨을 모델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으로 재구성하여 자율학교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차터스쿨이 지니는 특징 중 협약 체결, 단위학교 자율권 신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부여 등 유사점도 인정되나 위탁 운영 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책무성 이행 체제의 느슨함을 볼 때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하기 어렵다. 미국의 차터스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강한 법령이 더 성공적이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법의 일반적인 속성을 생각한다면 법 개정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국내 자율학교에 부여되는 자율의 정도가 제한적이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자율학교의 역할을 매우 제한하였다(이재훈, 2006). 제주형 자율학교는 기존의 자율학교의 자율권보다 더 확대된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설립 주체 및 운영자 범위, 규제 완화 정도, 학생 정원, 재정 지원 형태, 교직원 관리, 책무성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책무성 평가의 내용으로 현재 일반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장학지도와 감사의 형태, 학교평가, 운영계획 이행정도, 학부모 만족 조사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터스쿨의 경우 운영계획 이행 정도를 중심으로 학업성취, 재정운영, 학부모 만족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주단위 표준화 검사, 재정운영의 효율성·적절성·투명성 등이 평가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도 자율성에 대한 대가로 책무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

#### 1) 운영사례

영국에서 학교의 유형은 매우 복잡하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1994년 Burtler교육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를 구분하면, 지방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 공립학교(Community School), 특정 개인이나 교회가 설립하였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는 기부제 재정보조 학교(Voluntary-aided School), 기부제 통제학교(Voluntary-controlled School), 특별협약학교(Special Agreement School)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들이 전통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판, 국가 경쟁력의 저하,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의 문제를 보이자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을 제정하여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교부금 지원학교(Grant Maintained School, GMS)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율학교 유형인 교부금 학교가 폐지된 이후, 새롭게 제도화된 아카데미스쿨은 영국의 분권화된 교육체제의 전통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근거한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 정책(Local Management School, LMS)속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교부금 학교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

고 있어 부모와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의 양분 속에서 대다수의 공립학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공립학교 개혁을 주된 목표로 하는 아카데미 스쿨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2년 9월 처음으로 아카데미 스쿨이 개교한 이래 2003년 9월에 9개, 2004년 9월에 5개가 설립되어 2007년까지 57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전체 57개의 학교 중 27개가 런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영국 내 중등학교의 숫자가 약 3,400개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200개(런던 60개 포함) 학교가 설립된다면, 전체 중등학교의 약 6%가 아카데미 스쿨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카데미 스쿨은 특정 취약 지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 유형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는 아카데미 스쿨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과 운영이 지원되지만 학교의 운영은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대폭 개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카데미 스쿨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카데미 스쿨의 구체적인 설립 형태는 구제가 불가능한 학교를 인수하여 개편한 후 설립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여 설립하는 경우, 지역의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개편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새로운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구제가 불가능한 학교를 폐교, 매각 처리하여 건물을 헐어 내고, 새롭게 건물을 세우고, 운영진과 학교명을 바꾸고, 교원을 새롭게 고용하여 개교를 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아카데미 스쿨의 설립 및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설립의 비용 중 10%는 학교 운영 주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둘째,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학교운영 주체와 학교운영위원회에게 주어진다. 셋째, 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재정 배분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넷째, 아카데미 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단위학교에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학생을 받아들이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의 특성, 지역적 여건, 학부모의 소재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입학 희망자를 지필고사에 의한 성적순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학교운영의 모든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영국의 다른 일반학교와 같은 학교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의 비율이 다르다.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대표 1/3, 지역사회 대표 1/4, 교사 대표 1/4, 지역교육청 공무원 파견 1/4, 그리고 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아카데미 스쿨의 경우, 학교 운영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율적인 결정으로 단위학교 교원과 직원을 임명 및 해고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직원은 필요에 의하여 공모에 의하여 직접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 임용하는데, 교원들의 임용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지 않는다(최봉섭, 2005). 아카데미 스쿨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액의 재정을 들여 21세기 형 디자인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감한 시설투자와 유능한 교장·교사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다(최상덕,2006). 그 형태는 수차례의 장학감사와 지방교육청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를 인수하여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춘 뒤 전혀 다른 이미지의 학교로 개교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헐고 최첨단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학교로 개교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 2) 시사점

자율학교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아카데미스쿨을 포함한 영국의 보통학교들이 행사하는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무성의 구현이다. 영국형 자율학교들이 누리는 자율의 많은 부분은 자율학교 이전에 영국의 모든 학교에 보장되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율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학교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율성은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카데미스쿨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0년까지의 설립을 목표로 영국 정부가 50억 파운드(약 10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특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건물을 구축하거나 최첨단 기자재 구입 등은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자율적 집행도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성과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학업성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4. 선행연구 분석

현재 한국의 자율학교 운영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등학교 관련내용은 미비한 상태이다. 중·고등학교 중심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차터스쿨의 운영 절차와 효과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 정도가 주를 이룬다. 한국과 미국의 배경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차터스쿨의 역사가 10여년이 넘었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진단되어 정착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의 선택권 확대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우선 차터스쿨과 한국 학교의 자율학교와의 비교 연구(박세훈, 2003)를 보면, 학교현장,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교육재정 지원·운영 등에서 차터스쿨에 비해 한국의 자율학교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자율학교에게는 우선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와 일반 공립학교간의 경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차터스쿨과 학교단위책임경

영제와의 비교 연구(김민조, 2003)에서도 차터스쿨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자율성의 정도가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학교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학교재정, 교원인사, 교육과정의 측면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의 발휘 또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상부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권한 부여에 대한 엄정한 책무성 판별이 요구된다.

영국의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과 변화 과정 연구(정금현, 2006)에선 한국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공영형 자율학교라 할 수 있는 GM school 도입과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여 GM school의 변화 과정을 내적 변수와 외적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고, GM school의 변화 과정의 경로의존성을 논의하였다. GM school의 변화과정은 내적변수보다는 정치적, 가치적, 관계적, 확산적 변수와 같은 외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변화 과정의 경로는 선택, 자율, 다양화의 확대 과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할 때 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선택, 자율, 다양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율학교 정책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학자들의 연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율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연구에선(최금진·배장오, 2003:254)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도입된 자율학교제도의 정책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운영 중인 자율학교의 유형, 유형별 현황 및 자율 학교의 자율권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율학교 지정 목적, 운영에서의 문제점, 자율권 활용도 및 자율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 자율권의 확대와 교육적 이상 실현을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들 자율학교는 교육재정 및 시설부족과 시·도 교육청의 일반학교와 동등한 각종 규제, 교사들의 업무과다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율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학교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인 자율학교 평가 체제(정수현·최금진, 2003)에서는 국가 수준 자율학교 평가 체제의 적절성과 바람직한 자율학교 평가 방향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자율학교 평가 체제의 개선 방안과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이진철, 2007)에선 현행 자율학교 정책은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측면에서 제한적이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다양화·특성화가 정규 교육과정 차원의 변화라기보다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탈규제 학교를 표방하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제 위주의 교육행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조사 연구(김현진, 2006)에선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행정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 개발에 참고 될 수 있는 기초 정책 자료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공립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그리고 자율학교의 운영 모형 및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공영형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이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주체들의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은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 참여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도입 및 운영 단계의 저해 요인으로 교육주체들의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아무리 이상적이고 다양한 학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교육주체들의 전문성과 참여 의지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그 만큼 낮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보면 학교의 권한이 좀 더 확대되고 책무성을 엄정히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유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그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및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확충이 요구되며, 제주형 자율학교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이고 다양한 학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교육주체들의 전문성과 참여 의지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그 만큼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원어민 교사의 확대 배치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을 살펴보고, 쟁점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Ⅲ.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

#### 1. 지정 배경 및 경과

##### 가. 지정 배경

2000년대 들어서 제주도에서는 신제주·노형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전국 최대수준의 과밀학급(<표Ⅲ-1>) 현상이 발생하고, 반면 농어촌이나 도심 지역 등은 인구유출로 영세화 및 소규모화(<표Ⅲ-2>) 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Ⅲ-1> 도시개발지역 과대학교 현황

학교명	2000년도		2003년도		2006년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신광교	58	2,455	62	2,487	62	2,336	
동광교	58	2,385	61	2,351	59	2,068	
한라교	44	1,750	54	2,283	74	2,820	'01.3.1개교
동홍교	15	573	30	1,033	38	1,294	'00.3.1개교
노형교	42	1,709	55	2,382	69	2,554	
인화교					47	1,887	

※ 출처 :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도교육청)

<표Ⅲ-2> 도심 소규모 공동화 학교 현황

학교명	1990년도		2000년도		2003년도		2006년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제남교	40	1,889	16	544	17	524	16	472	△24학급
제북교	30	1,364	18	639	16	525	13	365	△17학급
일도교	26	1,136	14	470	14	491	14	387	△12학급
광양교	39	1,745	20	747	20	709	18	596	△21학급
한천교	39	1,855	22	840	24	851	23	756	△16학급
서귀포교	38	1,833	24	852	21	616	16	468	△22학급
서귀서교	25	1,164	19	572	16	444	13	362	△12학급

※ 출처 : 제주교육 통계연보(제주도교육청)

※ 서귀포교 및 서귀서교는 2006. 11. 1부터 공동화 학교로 지정 운영



제주도를 국제교육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법이 발효된 후 제주교육의 당면 과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의 자율학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내 일부 개발지역은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매년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인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주를 아름답게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나타났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 희망이 넘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국제기준의 학교제도 도입·운영, 우수 제주학생 발굴 및 국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과 도교육청이 교육발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사업과 학생 수용정책을 연계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 수준의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청은 학교 신설비용(약 250억원)을 절감하여 모델 학교 운영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특별법 제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차별화되고 특성화 된 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자율권이 강화되는 학교를 육성하고자 특별법상 자율학교를 2007년 3월 1일부터 2년간 운영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상설운영 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심 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 등 대상으로 2006년 12월 29일까지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가능한 학교는 도심 공동화 학교인 제주남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이며,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로 신제주·노형 개발지역 인근의 광령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 신업중학교, 애월중학교 등 6개교, 제주도 일도 개발지역 인근의 북촌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조천중학교, 함덕중학교 등 4개교, 서귀포 동홍개발지역 인근의 신례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효돈중학교, 남원중학교, 위미중학교 등 7개교였다.

도교육청은 이들 대상 학교로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신청한 초등학교인 제주북초등학교(외국어교육), 제주남초등학교(혼합프로그램), 광양초등학교(혼합프로그램), 일도초등학교(창의적 체험위주 프로그램), 대흘초등학교(혼합프로그램), 광령초등학교(외국어교육), 장전초등학교(영어교육), 서귀포초등학교(외국어교육), 서귀서초등학교(도심공동화학교) 등을 대상으로 2007년 1월 10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추천을 거친 후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제주북초등학교·광양초등학교·대흘초등학교·광령초등학교·서귀포초등학교의 5개 초등학교를 지정하였다.



## 나. 정책추진 경과

2006년 11월 15일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계획 발표 후 제1기 자율학교로 9개교가 선정되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년간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20일 제2기 자율학교 25개교가 지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정책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11월 15일 '제주특별법상 자율학교(i-좋은학교)' 지정·운영 계획 발표
- 2006년 12월 07일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지정·운영 계획 수립
- 2006년 12월 12일 도심 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 등 대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신청 모집 공고
- 2007년 0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를 2007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1월 10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에서 신청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sup>11)</sup>
- 2007년 01월 31일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 운영방안 최종 확정 발표
- 2007년 02월 13일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운영지원협의회 구성
- 2007년 04월 06일 교육감-학교장 협약<sup>12)</sup>
- 2007년 07월 08일 200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9개 학교 18억)
- 2007년 12월 30일 제주형 자율학교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08년 03월 07일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 2008년 03월 17일 제주형 자율학교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2008년 05월 19일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단 구성
- 2008년 07월 22일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15항목 평가지표 확정
- 2008년 09월 01일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 최종 협의회
- 2008년 09월~10월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실시
- 2008년 12월 30일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2차 시범학교 심의·확정
- 2009년 02월 20일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2차 시범학교 지정<sup>13)</sup>

11) 초등학교는 제주북교(외국어교육), 대흘교(혼합프로그램), 서귀포교(외국어교육), 광양교(혼합프로그램), 광령교(외국어교육), 중학교는 남원중(자율학교), 함덕중(독서논술 및 예체능프로그램), 신업중(외국어), 고등학교는 세화교(혼합프로그램)가 지정

12)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과 협약제”가 실시된다.

13) 초등학교 14개교 : 광양교, 광령교, 제북교, 대흘교, 광금교, 구좌중앙교, 남읍교, 일도교, 제남교, 하귀교, 서귀포교, 신례교, 서귀서교, 한마음교, 중학교 6개교 : 함덕중, 신업중, 김녕중, 한림여중, 남원중, 위미중, 고등학교 5개교 : 세화교, 표선교, 대정교, 성산교, 뷰티교

## 2.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제적 기초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후 2006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기존 자율학교보다 특별범위가 확대되고 차별화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의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sup>14)</sup>

동 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교원 임용, 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들이 규정되어 있다.

####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4) 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42회 개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5호

##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p>15)</sup>

동 법 시행령에는 제29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관련 규정이 있다.

### 제29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그 밖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 제30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법인이사장의 의견(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 회의록(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5) 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이후 6회 개정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 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2호(2007. 1.10)

동 조례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선정을 위한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4.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심의 요청)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기타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제10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1조 (위원회 위임)

## 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37호 (2007.1.23)

동 규칙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적용범위, 지정 절차, 운영기간, 입학전형, 운영비의 지원, 교직원에 대한 우대, 학교운영의 공개, 학교 현장의 개정, 협약의 체결, 평가, 장학지도 및 지정 취소 관련 규정을 하고 있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신청·지정 및 이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
5. 기타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운영기간)

자율학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입학 전형)

①초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다만, 초·중학교에서 이 밖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고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전국적으로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입학 전형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입학전형일부터 10개월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에 대한 우대)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시범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직원에 대하여 인  
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사행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지정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 현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이 학교현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교육감에게 신청하  
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율학교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이 제1항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달성 정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①도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자체평  
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  
며,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지도 등)

①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이 당초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  
에 그쳐야 한다.

②장학지도와 감사 및 조사는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학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현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 3.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

#### 가. 학교현장의 제정

일반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차이점으로 학교현장을 들 수 있다(<표Ⅲ-3>). 학교현장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공공성·책무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질 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에 부여한 제주특별법 특례사항을 포함, 교육이념·교육목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교육과정,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교 운영(인사관리, 재정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등), 후생 복지 지원, 학교 발전 계획, 자율학교 해체 시 학생보호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담아 공표한 후 시행하는 제도이다.

<표Ⅲ-3>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구분	일반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주체	설립·운영권자 동일 : 국가, 교육청, 사학법인	성과협약을 맺은 학교장
운영상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율성	학생 모집	평준화 원칙 유지하되,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 가능
	교원 인사	교원 자격제 엄격 적용 학교장의 인사권 제약 순환전보제에 의한 교원 임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 제약
책무성	학교평가시스템 미흡 - 관리적 책무성 위주	협약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교육적 책무성 강화
인센티브	없음	자율학교 교직원 근무가산점 부여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 재정 지원 외국인 기간제 교사의 임용,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배치
학교현장	없음	현장 제정 공개 (현장에 따른 학교 운영 보장)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6.12.06)

특별법령상 학교장 자율권을 학교현장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교현장은 종합 평가 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며 일반학교와의 차별성을 갖게 한다. 학교현장에 명시된 내용은 <표Ⅲ-4>과 같다.

<표Ⅲ-4> 학교현장에 명시된 내용<sup>16)</sup>

장	절·조 및 세부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이념) 제2조 (교육목표) 학교 교육목표 제3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제4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자율학교 시범 운영 기간
제2장 교육과정	제5조 (차별화된 창의적 교육과정 등) 차별화되는 교육과정, 집중이수과정 등 제6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용 등 제7조 (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사용에 대한 계획
제3장 교육여건	제8조 (교원) 교원 정원 확보사항 제9조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 확보사항
제4장 학사관리	제10조 (학생선발) 학생 선발 및 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 (학생정원관리) 모집단위, 학생 전학 및 편입학 제12조 (학년도, 수업연한) 제13조 (학기 및 수업일수) 제14조 (학년제) 제15조 (조기진급·졸업)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6조 (교장 ) 교장 인사관리 원칙 등 제17조 (교직원) 교직원 인사관리 원칙 등 제18조 (강사·산업체 겸임교원) 강사·산업체 겸임교원, 채용절차, 채용 기준 등 제2절 재정운영 제19조 (학교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집행, 학교비 회계 확보방안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2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1조 (학생장학금) 장학금 지원 제22조 (학생특별활동) 특별활동 지원 제23조 (기타) 기타 지원 운영계획
제7장 보칙	제24조 (학교발전 계획)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제25조 (학교현장 변경) 학교현장은 학교설립·운영주체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 제26조 (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제27조 (공표·시행) 이 현장은       년   월   일 공표 후 시행한다.

16)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정리함.

## 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상의 특례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2007년 1월31일 발표하였다. 2007년 3월 1일부터 도내 초·중·고교 9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 제주형 자율학교는 연간 수업시수를 일반학교보다 10% 정도 더 확대하고, 학교마다 일정 과목을 외국 교과서로 지도하며, 영어교육을 매일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교운영 형태와 확연히 구분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연간 기준 수업시수의 10%를 증가하여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3 ~ 4학년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는 연간 952시간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0%를 증가하게 되면 연간 1,047시간으로 수업시간이 늘어났다. 중학교는 1 ~ 3학년 1,122시간에서 112시간이 증가된 1,234시간으로, 고등학교는 1 ~ 3학년 1,190시간에서 119시간 늘어난 1,309시간의 수업을 실시했다. 늘어나는 수업시간은 학교가 필요한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편성·운영하며, 논술, 토론 등 창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무학년·무학급제 형태로 도입·운영하였다.

영어 과목은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매일 수업을 실시하며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외국어 교육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외국교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교과목의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되며, 학교마다 적어도 1 종류 이상의 외국교재를 교실 수업에서 사용하고 일부교과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운영하게 하였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영어교육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별로 9학급까지는 1명씩 배치하고, 10학급 이상은 2명씩 배치하였으며, 학교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원어민 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공동 지원하는 특별지원금(학교당 2억원 내외)으로 추가 채용하게 하였다.

제주도내 일반 학교의 학력평가는 주로 4회(학기초, 학기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학교에서는 그보다 많은 6회 이상을 계획하고 이러한 개별 학생에 대한 학력수준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학기중에는 물론 방학중에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일부 우수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기졸업 등을 통해 수업연한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 5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광령초등학교<sup>17)</sup>

### 가) 편성의 기본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 교과 편성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하고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단, 1학년은 3월의 4주간을 학교 적응 활동 교과인 우리들은 1학년으로 운영한다.
- 재량활동은 생활영어, 독서논술 교육,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창의적 재량활동(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학년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운영하되, 학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살려 학년별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운영한다.
- 특성화 교과로는 생활영어, 논리수학, 독서논술토론, 창의미술, 나눔음악을 운영한다.
- 특성화 교과인 창의미술은 전학년 미술(즐거운 생활)교과에, 나눔음악은 전학년 음악(즐거운 생활)교과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나) 운영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전학년 주 2시간씩을 증배하되 1·2학년은 재량활동(생활영어)에 배당하고, 3~6학년은 수학 교과(논리수학), 영어 교과(생활영어)에 각각 1시간씩 배당한다.
- 1·2학년 즐거운생활 교과의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 교과(생활영어)활동에 배당한다.
- 3학년은 체육 교과에서 1시간, 4학년은 체육 교과와 특별활동에서 각각 1시간, 5·6학년은 실과 교과와 특별활동에서 각각 1시간씩을 특성화 교과(생활영어)에 배당한다.
- 전학년 미술(즐거운 생활)교과에 특성화 교과인 창의미술을 주 1시간 배당한다.
- 전학년 음악(즐거운 생활)교과에 특성화 교과인 나눔음악을 주 1시간 배당한다.
- 4~6학년 특별활동은 주 1시간을 감축하여 영어시간으로 운영한다.
- 재량활동은 1·2학년은 생활영어 3시간, 독서논술 1시간, 정보통신기술활용 및 보건교육 1시간으로 배당하고, 3~6학년은 독서논술 1시간과 정보통신기술활용 및 보건교육 1시간으로 배당한다.
- 시간 배당 기준에서 주당 평균 시간 수는 연중 고정, 일률적이 아니라 학교 실정과 계절에 따라 가감 조절하되 연간 총 이수시간 수를 반드시 확보한다.

17) 2008년 광령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다) 연간수업시수 계획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수업시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성화교육이 기술되어 있다. 전 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가 2시간 증배되었으며, 특성화 교육의 내용은 외국어, 미술 및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령초등학교의 연간수업시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Ⅲ-5>와 같다.

<표Ⅲ-5> 광령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학 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 과	우리들은 1학년	80	80	·	·	·	·	·	·	·	·	·	·		
	바른생활	60	60	68	68	·	·	·	·	·	·	·	·		
	슬기로운 생활	90	90	102	102	·	·	·	·	·	·	·	·		
	즐거움 생활	180	120	204	136	·	·	·	·	·	·	·	·		
	국 어	210	210	238	238	222	222	188	188	188	188	188	188		
	도 덕	·	·	·	·	34	34	34	34	34	34	34	34		
	사 회	·	·	·	·	96	96	96	96	96	96	96	96		
	수 학	120	120	136	136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과 학	·	·	·	·	96	96	96	96	96	96	96	96		
	실 과	·	·	·	·	·	·	·	·	68	34	68	34		
	체 육	·	·	·	·	102	68(2)	102	68(2)	102	102	102	102		
	음 악	·	·	·	·	68	68	68	68	68	68	68	68		
	미 술	·	·	·	·	68	34	68	34	68	34	68	34		
	영 어	·	·	·	·	34	34	34	34	68	68	68	68		
특 성 화 교 육	외국 어 (영어)	영어회화				·	68	·	68	·	68	·	68		
		몰입영어 (수학)				·	34	·	34	·	34	·	34		
		Reading						·	34	·	34	·	34		
	미술	창의미술	·	30	·	34		34		34		34		34	
		재량 활동	영어회화	·	120	·	136								
			독서논술	·	30	·	34		34		34		34		34
			ICT교육	·	15	·	17		17		17		17		17
	국제이해	·	15	·	17		17		17		17		17		
특별 활동		30	30	34	34	34	34	68	34	68	34	68	34		
연간 수업 시수		830	890	850	918	952	1,020	952	1,020	1,054	1,122	1,054	1,122		
주당 수업 시수		25	27	25	27	29	31	29	31	32	34	32	34		

## 2) 광양초등학교<sup>18)</sup>

### 가) 편성의 기본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 교과 편성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국어, 사회(슬기로운 생활), 도덕(바른생활)교과의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르고, 그 외 교과의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에서 자율 편성 운영한다.
-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되 특성화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하고 1·2학년의 교과는 우리들은 1학년,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학년에 따라 즐거운 생활, 미술, 실과, 특별활동 지도시수를 감축하여 특성화 교육활동 시간으로 확보한다. 3~6학년 국어과 수업시수 중 주 1시간은 독서논술 교육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재량활동은 영어회화, 재능교육,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2학년인 경우 특성화교육활동인 영어회화는 재량활동 영역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영어교육은 학년에 따라 주 2~4시간, 재능수업은 주 1~2시간을 운영하며 3~6학년은 주1회 이중언어수업(음악)을 실시한다. 전학년 재량활동 시간에 주 1회 정보통신기술활용 및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행사,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되 4~6학년의 계발활동은 재능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나) 운영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과정편성위원회 및 교육과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 영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일부과목에 집중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교과 간 시수 변동에 따른 학습 수행능력을 파악하여 개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능력이 차이를 인정하여 수준별 보충학습 지도를 통한 제학력 갖추기에 역점을 둔다.
-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 지도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를 제작 제공한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실시하여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통한 외국학교와의 동시 화상수업과 외국학교 어린이들과의 실시

18) 2008년 광양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간 인터넷 화상대화를 추진한다.

- 다양한 교원연수를 통한 교사의 자질 및 교수 능력향상에 힘쓴다.

다) 연간수업시수 계획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수업시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성화교육이 기술되어 있다.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가 2시간 증배되었으며, 특성화 교육의 내용은 이중영어, 논술·토론 및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양초등학교의 연간수업시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Ⅲ-6>과 같다.

<표Ⅲ-6> 광양초등학교 연간 수업시수 계획

구 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 과	우리들은 1학년	80	80	·	·	·	·	·	·	·	·	·		
	바른생활	60	60	68	68	·	·	·	·	·	·	·		
	슬기로운 생활	90	90	102	102	·	·	·	·	·	·	·		
	즐거운 생활	180	180	204	170	·	·	·	·	·	·	·		
	국 어	210	210	238	243	238	204	204	173	204	170	204	170	
	도 덕	·	·	·	·	34	34	34	34	34	34	34	34	
	사 회	·	·	·	·	102	102	102	105	102	104	102	102	
	수 학(물입)	120	120	136	139	136	136	136	136(34)	136	137(34)	136	136(34)	
	과 학(물입)	·	·	·	·	102	102(34)	102	102	102	102	102	102	
	실 과	·	·	·	·	·	·	·	·	68	35	68	35	
	체 육	·	·	·	·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5	
	음 악(물입)	·	·	·	·	68	68(34)	68	70(34)	68	72(34)	68	69(34)	
	미 술	·	·	·	·	68	34	68	35	68	36	68	38	
	영 어	·	·	·	·	34	34	34	37	68	68	68	68	
특 성 화 교 육	이중영어				·	68	·	68	·	68	·	68		
	논술·토론					34		34		34		34		
	재량 활동	ICT교육	30	30	34	37	34	34	34	34	34	36	34	36
		영어회화		62		72		68		68		102		110
재능교육			30		38		68	34	71	34	102	34	108	
특별 활동	30	30	34	34	34	34	68	34	68	34	68	34		
연간 수업 시수	830	892	850	937	986	1054	986	1042	1088	1171	1088	1186		
주당 수업 시수	25	27	25	27	29	31	29	30	32	34	32	34		

### 3) 대흘초등학교<sup>19)</sup>

#### 가) 편성의 기본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 교과 편성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차별화교육과정) ①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 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르고, 이들 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교육과정은 기본 교과, 자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제주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에 의하여 학교 교육 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교 단위의 연구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학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종 기초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교과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 나) 운영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제주형 자율학교에 따른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는 각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핵심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연간 지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ICT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교재 등의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기본 생활 습관 교육, 인성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교육, 환경 교육, 향토 문화 전승 교육, 해양교육 등 범교과 학습의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19) 2008년 대흘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 순서와 지도 시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다) 연간수업시수 계획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수업시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성화교육이 기술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수가 1~2학년은 2시간, 3~4학년은 4시간, 5~6학년은 3시간 증배되었으며, 특성화 교육의 내용은 기본 교과, 자율 교과 및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흥초등학교의 연간수업시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Ⅲ-7>과 같다.

<표Ⅲ-7> 대흥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구 분	학 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 과	우리들은 1학년	80	80	.	.	.	.	.	.	.	.	.	.	.
	바른생활	60	60	68	68	.	.	.	.	.	.	.	.	.
	슬기로운 생활	90	90	102	102	.	.	.	.	.	.	.	.	.
	즐거운 생활	180	180	204	204	.	.	.	.	.	.	.	.	.
	국 어	210	210	238	238	238	238	204	204	204	204	204	204	204
	도 덕	.	.	.	.	34	34	34	34	34	34	34	34	34
	사 회	.	.	.	.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수 학	120	120	136	136	136	136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과 학	.	.	.	.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실 과	.	.	.	.	.	.	.	.	68	34	68	34	
	체 육	.	.	.	.	102	68	102	68	68	68	102	68	
	음 악	.	.	.	.	68	68	68	68	68	68	68	68	
	미 술	.	.	.	.	68	34	68	34	68	34	68	34	
	영 어	.	.	.	.	34	34	34	34	68	68	68	68	
특 성 화 교 육	기본 교과	활동수학				.	34	.	34	.	34	.	34	
		생활영어					68		68		68		68	
	자율 교과	창의					34		34		34		34	
		심성					34		34		34		34	
	재량 활동	창의적재량 생활영어		30		34								
				30	68	34	68	34	68	68	68	68	68	
				15		17								
특별 활동	30	30	34	34	34	34	68	34	68	34	68	34		
연간 수업 시수	830	890	850	918	986	1088	986	1088	1088	1190	1088	1190		
주당 수업 시수	25	27	25	27	29	32	29	32	32	35	32	35		



#### 4) 서귀포초등학교<sup>20)</sup>

##### 가) 편성의 기본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 교과 편성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자율과목(특성화과목)으로 편성한다.
- 1·2학년 교과는 국가 수준 교과와 기초 영어, 영어회화, 수학몰입영어, 과학몰입영어, 음악몰입영어, 중국어, 독서·논술, 총 11개 과목으로 편성한다(단, 1학년은 입학초기 학교 적응활동에서 우리들은 1학년을 포함한다).
- 3·4학년 교과는 국가수준 교과와 영어회화, 수학몰입영어, 과학몰입영어, 음악몰입영어, 중국어, 독서·논술, 총 14개 과목으로 편성한다.
- 5·6학년은 국가수준 교과와 영어회화, 수학몰입영어, 과학몰입영어, 음악몰입영어, 중국어, 독서·논술, 총 15개 과목으로 편성한다.
-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1시간은 중국어 특성화 과목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한다.

##### 나) 운영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수성,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학생의 개성과 능력,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기본 생활 습관 교육, 인성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교육, 환경 교육, 향토 문화 전승 교육, 해양 교육 등 범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학년 수준에 알맞은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각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및 특별 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0) 2008년 서귀포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다) 연간수업시수 계획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수업시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성화교육이 기술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수가 1~2학년은 5시간, 3~4학년은 4시간, 5~6학년은 3시간 증배되었으며, 특성화 교육의 내용은 영어회화, 수학몰입, 과학몰입, 음악몰입, 중국어 및 독서논술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초등학교의 연간수업시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Ⅲ-8>과 같다.

<표Ⅲ-8> 서귀포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구 분	학 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 과	우리들은 1학년	80	80	.	.	.	.	.	.	.	.	.	.
	바른생활	60	60	68	68	.	.	.	.	.	.	.	.
	즐거로운 생활	90	90	102	102	.	.	.	.	.	.	.	.
	즐거운 생활	180	90	204	102	.	.	.	.	.	.	.	.
	국 어	210	210	238	238	238	238	204	204	204	204	204	204
	도 덕	.	.	.	.	34	34	34	34	34	34	34	34
	사 회	.	.	.	.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수 학	120	120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과 학	.	.	.	.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실 과	.	.	.	.	.	.	.	.	68	34	68	34
	체 육	.	.	.	.	102	68	102	68	102	68	102	68
	음 악	.	.	.	.	68	34	68	34	68	34	68	34
	미 술	.	.	.	.	68	34	68	34	68	34	68	34
	영 어	.	30	.	34	34	34	34	34	68	68	68	68
특 성 화 교 육	영어회화		60		68	.	68	.	68	.	68	.	68
	수학몰입		30		34	.	34	.	34	.	34	.	34
	과학몰입	.	30	.	134		34		34		34		34
	음악몰입	.	30	.	34		34		34		34		34
	중국어	.	60	.	68		68		34		68		68
	독서논술	.	30	.	34		34		34		34		34
재량 활동	60	30	68	34	68	34	68	34	68	34	68	34	
특별 활동	30	30	34	34	34	34	68	68	68	68	68	68	
연간 수업 시수	830	890	850	918	952	1,020	952	1,020	1,054	1,122	1,054	1,122	
주당 수업 시수	25	30	25	30	29	33	29	33	32	35	32	35	

## 5) 제주북초등학교<sup>21)</sup>

### 가) 편성의 기본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 교육활동 편성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교육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한다.
- 교과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3 ~ 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3·4학년은 실과 제외),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로 한다.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1학년만)으로 한다.
-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한다.
- 재량활동은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하되, 범교과(글로벌 ICT교육)와 자기주도적학습(특성화교육활동)으로 학년 교육과정에 의거 운영한다.
- 특성화교육활동은 독서·논술교육(국어교과 연계지도), 영어몰입교육(미국의 수학교과서), 체력단련교육, 영어회화(1~6학년), 중국어회화(5~6학년), 글로벌 ICT교육(1~6학년)으로 한다.

### 나) 운영 방침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적용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교과 시수에 주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독서논술 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 1·2학년 즐거운생활 교과 주당 시수 6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체력단련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 3~6학년 체육 교과 주당 시수 3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체력단련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 5·6학년 실과 교과 주당 시수 2시간 중 1시간과 재량활동 2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중국어 회화 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 1~4학년 재량활동 주당 시수 2시간 중 1시간과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주당 수업시수보다 1시간을 증배하여 특성화교육활동(영어회화교육) 시간에 2시간 배당한다.
-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주당 수업시수보다 2시간을 증배하여 특성화교육활동(영어몰입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재량활동 주당 시수 2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글로벌 ICT) 시간에 배당한다.

21) 2008년 제주북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다) 연간수업시수 계획

2008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수업시수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성화교육이 기술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수가 전학년 3시간 증배되었으며, 특성화 교육의 내용은 영어몰입, 영어회화, 글로벌ICT교육, 중국어회화 및 체력단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북초등학교의 연간수업시수의 자세한 내용은 <표Ⅲ-9>와 같다.

<표Ⅲ-9> 제주북초등학교 연간수업시수 계획

학 년 구 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 과	우리들은 1학년	80	80	·	·	·	·	·	·	·	·	·	
	바른생활	60	60	68	68	·	·	·	·	·	·	·	
	슬기로운 생활	90	90	102	102	·	·	·	·	·	·	·	
	즐거운 생활	180	150	204	170	·	·	·	·	·	·	·	
	국 어/논술	210	210	238	238	238	238	204	197	204	195	204	197
	도 덕	·	·	·	·	34	34	34	32	34	34	34	34
	사 회	·	·	·	·	102	97	102	100	102	97	102	96
	수 학	120	120	136	136	136	128	136	132	136	130	136	127
	과 학	·	·	·	·	102	97	102	100	102	97	102	96
	실 과	·	·	·	·	·	·	·	·	68	32	68	34
	체 육	·	·	·	·	102	66	102	64	102	65	102	65
	음 악	·	·	·	·	68	66	68	65	68	66	68	67
	미 술	·	·	·	·	68	66	68	64	68	66	68	68
	영 어	·	30	·	34	34	34	34	32	68	68	68	68
특 성 화 교 육	영어몰입	·	60	·	68	·	68	·	68	·	68	·	68
	영어회화	·	60	·	68	·	68	·	68	·	34	·	34
	글로벌ICT교육	·	30	·	34	·	34	·	34	·	34	·	34
	중국어 회화	·	·	·	·	·	·	·	·	·	68	·	68
	체력단련	·	30	·	34	·	34	·	34	·	34	·	34
특별 활동	30	30	34	34	34	34	68	64	68	68	68	68	
연간 수업 시수	830	890	850	918	952	1,020	952	1,020	1,054	1,122	1,054	1,122	
주당 수업 시수	25	28	25	28	29	32	29	32	32	35	32	35	

## 다. 특성화프로그램<sup>22)</sup>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어, 사회, 도덕이외의 교과와 수업시수 가감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면 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하고 1·2학년 교과는 우리들은 1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현교과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성화 교과목을 신설하여 부가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교과목의 시수를 할애하여 특성화프로그램의 내용을 편입시키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기본교과 시수조정 및 대표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은 <표Ⅲ-5>로 정리할 수 있다.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주당 수업시수를 2 ~ 4시간 증배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사항을 살려 학교장의 재량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 5개 초등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크게 외국어 교육, 독서논술교육, 예체능교육,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표Ⅲ-10> 제 1기 제주형 자율학교 현황

학교명	시범 운영 영역	기본교과 시수 조정	특성화 프로그램
광령초등학교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 프로그램	감 : 즐거운 생활, 실과, 체육	영어회화, 독서논술, ICT교육
광양초등학교	혼합 프로그램	감 : 수학, 과학, 실과 증 : 음악, 영어	영어, 음악, 재능교육
대흘초등학교	혼합 프로그램	증 : 수학, 영어, 과학, 체육	활동수학, 생활영어, 창의과목
서귀포초등학교	외국어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감 :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국어, 국제화
제주북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감 : 즐거운 생활, 실과, 체육	외국어몰입, 독서논술, 체력단련, 중국어

### 1) 외국어 교육

외국어교육은 중국어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2개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전 교사가 관여하는 참여형과 영어 전담 교사 위주로 분업화하여 관리하는 선택 집중형 두 유형으로 크게 나뉘었다. 각 학교의 운영관리자와 교사진의 특성에 맞춘 조직방법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교과 시수가 증가되면서 국정교과서와 교사가 개발한 자료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의 영어교육 전문 출판사가 개발한 영어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내용도 다른 교과와 내용과 주제가 확장되는 영어몰입식 수업이 도입되었다. 영어몰입 교과로 1과목을 실시한 학

22) 2008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함.



교가 2개교, 2과목을 실시한 학교가 3개교이고, 과목의 종류는 수학 4개교, 과학 3개교, 음악이 2개교에서 선택되었다. 중국어회화의 경우 전문 강사가 전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1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1개교였다.

<표Ⅲ-1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외국어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학년	시수	수업담당교사			내용
			전문강사 (외부)	전담	담임	
광령초등학교	전학년	4 ~ 6	○	○		외국교재 활용한 원어민 수업, 수학과 몰입교육
광양초등학교	전학년	2 ~ 7	○	○	○	영어회화 중심의 교육
대흘초등학교	전학년	2 ~ 4	○	○		생활영어, F-Day로 운영
서귀포초등학교	전학년	8 ~ 9	○	○	○	수준별 영어회화, 수학·과학·음악 몰입교육, 중국어회화
제주북초등학교	전학년	4 ~ 7	○	○	○	소그룹별 영어회화, 외국교재를 활용한 수학몰입, 중국어회화(5·6학년)

## 2) 독서·논술교육

독서·논술교육은 5개 학교가 모두 특성화프로그램으로 1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학년별 주제 및 도서를 선정하여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학교가 3개교, 국어교과를 재구성하여 논술 영역을 따로 배정하여 전문강사와 함께 지도하는 학교가 2개교였다.

<표Ⅲ-12>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독서·논술 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학년	시수	수업담당교사			내용
			전문강사 (외부)	전담	담임	
광령초등학교	전학년	1	○			학년별 독서논술교재 구입 활용한 독서·논술·토론 교육 실시
광양초등학교	3 ~ 6	1	○			독서·논술교육
대흘초등학교	3 ~ 6	1	○		○	국어교과를 재구성하여 논술의 기초를 다룸
서귀포초등학교	전학년	1	○			독서·논술교육
제주북초등학교	전학년	1	○		○	국어교과를 재구성하여 논술의 기초를 다룸

### 3) 예체능교육

예체능교육이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학교는 3개교로 그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며, 체육교과를 재구성하여 심성과목으로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1개교, 재능교육이라는 다양한 부서로 전문강사와 담임이 함께 지도하는 1개교, 체력단련으로 태권도 전문강사가 지도하고 있는 1개교가 있다.

<표Ⅲ-13>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예체능 교육 현황

학교명	대상학년	시수	수업담당교사			내용
			전문강사 (외부)	전담	담임	
광령초등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줄넘기 능력 강화
광양초등학교	전학년	1 ~ 3	○		○	재능교육으로 8개부서(관악, 생활공예, 에네메이션, 연극, 풍물, 핸드폴, 클래식기타)중 1개 선택 무학년제로 운영
대흘초등학교	전학년	1	○	○		체육교과를 재구성하여 심성과목 운영
서귀포초등학교						프로그램 없음
제주북초등학교	전학년	1	○			체력단련으로 태권도 운영

###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주형 자율학교의 예산 운용이 프로그램 개발비나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학교는 3개교였고, 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중 학생 1인이 1-2개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었다. 일반 학교와 같은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개교였으며, 자율학교 운영비로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켜 일반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보였다.

<표Ⅲ-14>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학교명	대상학년	무료	수업담당교사			내용
			전문강사 (외부)	전담	담임	
광령초등학교	전학년	○	○	○		1아동 1개 과목 무료 실시
광양초등학교	전학년		○			일반학교와 같음
대흘초등학교	전학년	○	○	○		1아동 2개 과목 무료 실시
서귀포초등학교	전학년	○	○			아이 좋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실시
제주북초등학교	전학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리전담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

### 5) 기타 교육활동

대흘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내용을 국어(논술)·도덕·사회·수학·영어를 포함하는 기본교과와 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을 포함한 자율교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귀포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이 영어와 수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귀포초등학교의 경우 1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한 교과를 수준별로 같은 과목을 학습하고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 1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수학과와 영어 회화를 학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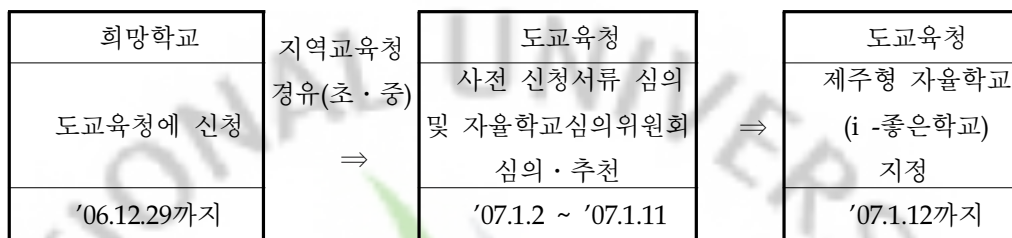
<표Ⅲ-15>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기타 교육활동 현황

학교명	대상학년	시수	수업담당교사			내용
			전문강사 (외부)	전담	담임	
광령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4 ~ 6	1	○	○	○	다양한 동아리 운영, 글로벌 ICT교육
대흘초등학교	3 ~ 6	2	○			과학교과를 재구성하여 창의 과목을 증배 실시, 수학교과를 재구성하고 활동수학을 증배 실시
서귀포초등학교	전학년		○		○	수준별 소그룹 학습 실시
제주북초등학교	전학년	4 ~ 7	○		○	글로벌 ICT교육 및 수학과 소그룹 학습 실시

### 라. 자율학교 지정 절차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심 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 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 등 대상으로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희망학교의 신청서(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학교현장(학교장 자율권의 범위 명시), 학교장 의견서(사립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주도 전체 학교의 5% 정도에 해당하는 10개교로, 지역별로는 제주시 6개교, 서귀포시 4개교 내외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북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등 상대적으로 신청이 많았던 초등학교는 5개교로 확대하고, 신청이 적었던 고등학교는 1개교로 축소하여 2007년 1월 10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추천을 거친 후 지정하게 되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선정을 위한 자율학교심의내용은 학교경영자의 학교경영의지 및 경영계획, 교육공동체의 의지, 학교현장에 나타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목표의 실현가능성, 학교현장에 나타난 교육과

정 편성 운영의 창의성, 학교현장에 자율권의 범위 명시 및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되는 교교 인사관리 계획의 적절성,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 및 사용 계획, 공동화학교·도심인근소규모학교·읍면지역의 학교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 정도, 창의적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걸맞은 재정 운영 계획 수립, 향후 적정학급·학생 수용 측면에서 발전가능성, 향후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발전 계획의 구체적 제시로 각 영역이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그림 III-1]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절차

※ 출처 : 제주도교육청 (<http://www.jje.go.kr>, 2006.12.06)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희망학교의 신청서(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 및 기간), 학교현장(학교장 자율권의 범위 명시), 창의적 교육과정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계획서, 학교장 자율학교 경영계획(사립은 이사장의 자율학교 경영계획),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신청서류가 제1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장 의견서에서 자율학교 경영계획서로 보완하였으며 예산계획서가 추가되었다.

#### 마.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협약 체결

##### 1) 성과협약

2006년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성과달성을 위해 국무총리와 도지사·교육감과의 성과협약(MOU)을 체결된 것을 바탕으로 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2007년 4월 교육감과 학교장과의 성과협약이 체결되었다. 성과협약에는 성과관리 항목으로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III-16>과 같다.

<표Ⅲ-16> 성과협약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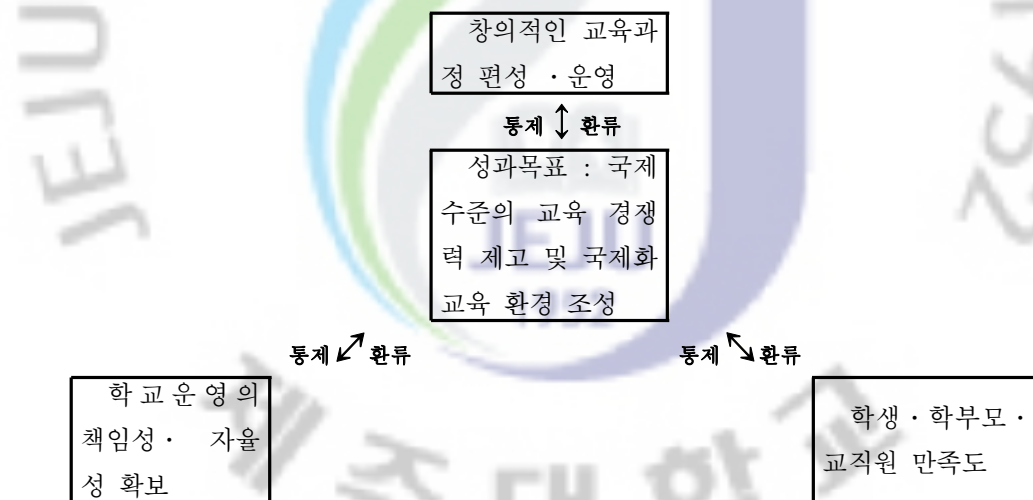
장·조	세부내용
제2장 성과관리 제4조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 교육감은 다음 연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12월 말까지 자율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기 자율학교 2009년도에 대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은 붙임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예시안)로 같음한다.
제5조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설정) ① 자율학교의 장은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당부서의 과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과 지표는 평가 기간 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급적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변경(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변경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적의 제출) 자율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 목표 달성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단)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성과평가단은 교직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8조	(성과 평가의 실시) ①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매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평가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7조에 의한 성과평가단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성과 평가 결과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9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은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평가 결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을 타나낸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정·보완, 교장·교감 등 교직원 업무실적 평가 반영, 자율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한 자율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성과지표 평가 구조 모형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는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그에 따른 책무성,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점검하여 학교가 스스로 하고자 한 것을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 첫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개선방안, 둘째,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여부, 셋째, 성과협약 내용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가 등 학교가 작성한 자체평가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외부 평가단이 학인 방문평가 하도록 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요 활동과 그 결과는 성과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학교활동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타당성이 확보되며, 교육의 성과도 성과목표에 의해 질적 수준이 판단된다고 하였다. 성과목표의 통제 기능 강조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결과를 성과목표에 환류 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지표 구조 모형은 [그림III-2]과 같다.



[그림III-2] 평가지표 구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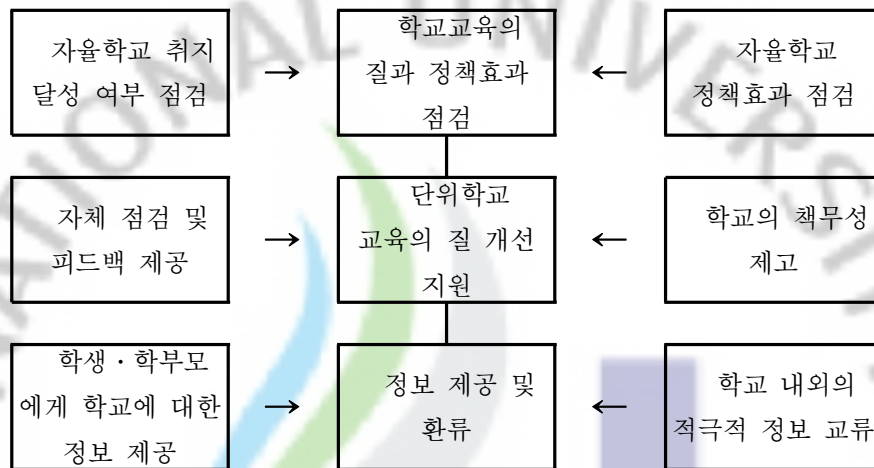
※ 출처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2008.07)

## 3)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의 목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다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교육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데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단이 확인 및 방문평가로 실시되며 통제보다는 자율학교가 그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담고 있는 학교현장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였으며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유형과 학년별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평가가 되도록 종합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림 III-3]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목표

※ 출처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2008.07)

제주형 자율학교가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 실시되는 만큼 학교운영의 자율성, 창의성, 책무성 등 자율학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지표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조성,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 충족 등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성과 점검을 통해 자율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 하였다.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정점수 산출은 ‘자율성’, ‘창의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학교 운영이 전체 학교의 모습(School as Whole)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평가를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 및 확대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구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교육전문가 및 학교평가 전문가와 수시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지표 개발 T/F팀에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표III-17>).

2008년 9월부터 10월초 까지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위원장 포함 9명)에 의한 방문평가가 실시되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병행 실시로 학교현장에 따른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활동 평가,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을 총 5단계의 평정적으로 판정하였

다(<표Ⅲ-18>).

<표Ⅲ-17> 전체평가분야(학교자체평가 예시)

성과 지표	세부 성과지표	평가지표
학교경영 자율성 · 책무성 확보 (120점)	창의적이고 특화된 학교 경영 (104점)	학교현장은 바람직하게 제정하였는가?
		학교현장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교원들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특례활용 (16점)	제주특별법·시행령에서 제시된 특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160점)	교육과정 자율편성·운영 (100점)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가?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화·세계화를 위한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체계적인 학력관리 (60점)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학력 갖추기 책임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80점)	도심 공동화 학교 및 인근 소규모 학교 균형 발전 (32점)	도심공동화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교육재정 편성·운영 (48점)	교육재정은 학교현장 실현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복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자율학교 만족도 (40점)		학생
		학부모
		교원
합계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8.07)

<표Ⅲ-18> 종합평가 기준

평정척도	평가 기준
0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관련 증거가 있기는 하나 매우 빈약하다.
2	관련 증거가 다수 발견되나 매우 평이하다.
3	학교 내에서 일반화하여 적용할 만큼 우수한 관련 증거가 많다.
4	타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할 만큼 모범적인 관련 증거가 많다.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8.10)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학교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견인차 역할이 잘 수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400점 만점에 32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제도에 대해 2008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23)일까지 도교육청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의 경우 5개의 초등학교는 종합점수(24)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을 만큼 근무교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 근무교원에 대한 질문 내용은 <표Ⅲ-19,20>와 같으며 그 결과는 <표Ⅲ-21>으로 정리하였다.

<표Ⅲ-19>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질문 내용

항목	내용
학교현장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 반영도
학교경영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 정도
특성화프로그램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정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정도
학업성취도 제고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학력 갖추기 책임지도 이행 정도
균형발전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정도
교육복지	교육복지를 위한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전반 만족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 만족도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8. 10)

23) 표본 대상 및 표본 크기는 총 6,634명이고 유효표본은 총 6,087이었다.

24) 종합점수 = 교직원 × 0.5 + 학생 × 0.3 + 학부모 × 0.2 / 가중치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이해 및 체감정도를 감안해 부여함.

<표Ⅲ-20>교직원 대상 질문 내용

항목	내용	
학교 운영 자율성·책무 성 확보	학교현장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특성 및 요구 반영도
	학교경영	학교현장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정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 정도
		학교와 지역 사회의 교육공동체적인 협력 관계 구축 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정도
	교육홍보	정쟁력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홍보 노력
	자율권 활용	제주특별법상 교육 특례 활용도
전반 만족도	학교운영 자율성·책무성 확보에 대한 전반 만족도	
창 의 적 인 교육과정 편 성·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현장의 목표와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업성취도 제고	세계화·지역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실시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학력 갖추기 책임지도 이행 정도
	전반 만족도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전반 만족도
교 육 균 형 발 전 · 교 육 재 정 관 련	지역 균형 발전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정도
	교육재정 운용	학교현장 실현 위한 바람직한 재정 운용 정도
	교육복지	교육복지를 위한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전반 만족도	교육균형 발전·교육 재정 관련에 대한 전반 만족도
전반 만족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 만족도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8.10)

<표Ⅲ-21> 학교별 학생·학부모·학부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전반 만족도

(단위 : 점)

학교	종합점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전반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광령교	93.4	93.1	83.0	97.7
광양교	95.6	93.5	87.7	100
대흘교	93.9	93.0	84.2	98.3
서귀포교	92.0	87.8	83.9	97.7
제주북교	93.0	89.8	84.4	98.3

※ 출처 : 제주도교육청(<http://www.jje.go.kr>, 2008.10)



## IV. 제주형 자율학교의 쟁점 및 개선 방안

### 1. 법제적 측면

#### 가. 학교 자율성 관련 규정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자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조직의 구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학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학교자치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세히 규정한 자율성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현장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자치조직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 학교의 최초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은 일반학교와 같은 수업 시수지만 예체능 교과목이나 재량활동을 감축하고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시수 감축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있어 영어교육 시수 증대에 대한 지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실무담당자 협의시 지향해야 할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서로 비슷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된 것 같아요.” (B교사)

“2007년 초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학교현장을 만들어야 할 당시 실무담당자로서 막막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준 예시 양식에 내용은 거의 바꾸지 않고 우리학교의 특성화부분만을 추가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학교현장은 2007년 4월까지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그 역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C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요구 사항은 다양했어요. 성과협약관련 부분부터 현판식, 컨설팅, 워크숍, 벤치마케팅을 위한 준비 등입니다.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는 생각보다는 도교육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학교현장의 내용마저도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와준다는 느낌보다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F교사)

교육에서의 평등은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인 평등이다. 교육기본법은 이를 받아 '교육내용·교육방법·교과 및 교육시설을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자율학교 등을 육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인 5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학구내 학생 및 과대·과밀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전입<sup>25)</sup>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형 자율학교 입법 취지는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설정·운영하기 때문이다.

“2008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최고였는데 그 당시 전학 오려고 문의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인근학교여서 통학 거리가 짧더라도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학구내 주소로 이전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리면 얼마나 따지시던지 난처했어요.” (F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기관인 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자율학교 지정 시에 학교현장 및 자율학교 운영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신학년도 학교운영계획 및 예산이 세워지는 연도 말에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대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 및 실질적인 지도·조언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극소수이며, 그나마 다른 학교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학교들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으로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제주형 자율학교의 입장에서는 취지와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교육청담당자와 함께 협력하고 설득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범학교 아니다. 그것은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적, 그러한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을 학교현장에 담고, 학교 현장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에서의 학교 현장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다. 학교현장은 자율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형식적인 문건으로 취급되고, 자율학교 구성원들 또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만한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25)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후 과대학교·과밀학급에서 전입한 학생이 2008.3.12.기준으로 390여명여 달함, 2009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회의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나. 특례 적용 범위 관련 규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성의 범위, 즉 특례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율권의 범위는 법에 규정된 것보다 상당히 축소되었다. 특별법령에 규정된 자율권은 <표IV-1>과 같이 8개 영역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행사되는 자율권은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사용, 교과서 사용, 학생모집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문민정부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던 대표적인 정책에 속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학교의 자율권 범위 안에 둔 것은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법령에서 정한 것에만 한정하고 그 이외에 단위학교의 자치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현성(2006:38)은 법에 규정된 자율성의 범위와 자율학교가 실제 행사하고 있는 자율성의 내용을 <표 IV-2>와 같이 비교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 적용 범위와 유사하다.

<표IV-1> 특별법령상 학교장에서 부여된 자율권

- 다음 사항을 초·중등 교육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교규칙, 학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교장 및 교감 자격, 교육과정의 기준·내용·범위 및 학교의 교과,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기타수업, 학생의 진급 또는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고등학교 수업연한
-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 (특별법 제186조제2항, 특별법시행령 제31조 제9항)
- 교육과정의 자율운영(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중 국어, 도덕, 사회 제외, 총 수업 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
- 학년도(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학기 및 수업일수(단축가능 수업일수는 100분의 200이내)(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호)
- 학년제(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100분의 20범위 내 조정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사용 가능(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시행령 제31조 제7항)
- 학생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가능
- 교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시행령 제31조 제10항)

<표IV-2 >법규정의 자율성과 실제 행사하는 자율성의 비교

자율성 영역	자율성 내용	법규정의 자율성	행사하는 자율성
학교자치조직의 자율성	운영대상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2004년부터), 고등학교만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적용하지 않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적용 받음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학년도 운영	학년도(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 까지)적용하지 않음	학년도 적용 받음
	학년제 운영	학년제에 의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을 적용하지 않음	학년제 적용 받음
	교과서 활용	국정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적용 않음	국정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적용 않음
	수업연한	초·중·고 학교의 수업연한 적용하지 않음	수업연한 적용받음
	학생 선발	전국단위 자율선발 적용	전국단위 자율선발 적용
	수업일수	수업일수 20/100 선에서 감축 운영 적용	부분 적용 받음
인사의 자율성	교장 등의 자격	교장, 교감의 자격 규정 모두 적용하지 않음	교장의 자격 규정만 적용하지 않음
	산학겸임교사	교사 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하는 규정 적용	부분 적용 받음
재정의 자율성	없음	없음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31조에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편성, 교사의 배치기준, 학교규칙, 특별수당 지급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허용되어야 할 권한들이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러한 권한들을 다른 학교들보다 먼저 부여받고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학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학교보다 한발 앞서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러한 자율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학교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이러한 취지를 계속 살려가려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허용되는 자율권의 범위도 지속적,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대는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례 적용 관련 자율권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런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2. 운영적 측면

### 가. 교육과정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가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만 치중, 공교육의 획일화를 낳고 있다는 쟁점은 끊이지 않고 있다(제민일보,08.01.16).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들이 영어교육에 치중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물론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과목 선택권마저 상실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주형 자율학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중 70~80%가 영어 등 외국어교육이다. 5개 초등학교가 전체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거나 일부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영어시수를 확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시수가 감축된 교과는 실과 4개교, 특별활동·즐거움 생활·체육·미술 2개교, 음악 1개교가 있고, 수업시수가 증가된 교과로는 영어 5개교, 수학 1개교, 과학 1개교, 국어 2개교, 중국어 2개교, 재능활동 1개교 등이다. 따라서 영어교과의 경우 1·2학년이 2~5시간, 3·4학년은 3~6시간, 5·6학년은 4~7시간까지 시수가 확대되었다. 일반학교에 비해 영어시수가 주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더 증가된 것이다.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개 원어민 교사와 담임교사, 영어전담교사가 영어 교과를 담당하고, 학교에 따라 영어몰입교과 전담교사 또는 선도교사 등이 영어몰입교과를 지도하도록 배정했다.

독서·논술의 경우 주당 1시간씩 4개교가 실시하는데 국어 시수를 일부 배분해 지도하는 학교와 추가로 시수를 확보하는 학교가 있었다. 제2외국어인 중국어는 주당 1~2시간 실시하는 2개교와 화상수업의 방법의 선택교과로 도입된 1개교가 있었다. 체력 및 재능, 기타 컴퓨터교육의 내용도 있지만 제주형 자율학교인 5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교과 시수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어 교육의 치중된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와 도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인의 육성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르나 영어교과 시수의 확대에 의한 영어 교육 전문 강사 채용, 영어 몰입용 외국 교과서 구입 및 영어 사용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많은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자율학교 표준안대로 학교장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 학교별로 큰 특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정규교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일반학교와 차별성을 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시수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시수는 늘어났지만, 재량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치중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화된 교사가 적어 핵심적인 부분을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강사에 대해 학교 자체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를 살려 특성화 프로그램을 책임감있게 운영할 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각 지역 학교급의 산발적 지정 운영으로 초·중·고의 연계성 있는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며 대다수 학생이 단일 학교급에 한해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음도 중요한 문제점을 나타냈다(제주의 소리,09.04.17).

자율학교가 누리는 자율성의 핵심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다. 교육의 다양화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있다고 할 때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다양한 교육 실천의 핵심이다(홍현성,2006:45).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 중에서도 핵심인 교육의 목표는 법률로 규정하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주체나 일반국민이 그 대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방향성은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해 지방정부 및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교육내용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은 자율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권한이지만, 대부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이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 중에 있으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년별 과목과 가르쳐야 할 내용, 수업시수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상부 지침의 기본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이수단위 및 영역별 최소 이수 단위를 제시해주고 학년별, 학기별 편성·운영에 대하여는 자율권을 허용하여 편성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원들도 교육과정 측면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업 시수의 증배에 따른 부담에 대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습니다.”(A교사)

“영어교육이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학교와 다르며 필요한 시간을 증배할 수도 있다.”(B교사)

“특례로 제시된 학교 자율성 보장이 교육과정 상에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영어교과시수의 증배라든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지원등에서 말이죠.”(C교사)

“수업 시수를 많이 증배하는 것은 교사나 학생에게 모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D교사)

“제주형 자율학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교육과정은 수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삼입시킬 수 있는거, 다만 국가단위 교육과정도 거의 이수하고 또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E교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의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2009.04.30)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확대를 지지 논평하였다.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은 학교 자율화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에 따른 기반 조성을 요구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있어서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 및 시간 배당이 유연화는 필요한 개선 방안일 것이다.

## 나. 재정 운영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와 학교 운영비 18억원을 50%씩 공동 투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 및 교직원 인사 우대 방안 등을 시행하였다. 자율학교 운영비의 명목인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였고 원거리 학생들의 등하교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까지 무료로 운행한 결과 도교육청이 도심지 인근 농산어촌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를 우선 선정·육성하자는 취지에 걸맞게 제주형 자율학교(일명 i-좋은학교)의 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민일보,08.03.19). 2008년 9월 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형 자율학교 중 초등학교 5개교의 지난 2년간 학생수 변동 현황을 살핀 결과, 학교별로 최소 16명에서, 최고 62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통폐합대상학교로 폐지논란까지 있었던 대흘교는 제주형 자율학교 실시 이후 155명(08.03.12 현재)으로, 자율학교 이전 78명에 비해 학생수가 2배 증가했다. 투입한 예산을 생각하면 당연한 성과이며 프로그램 운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였지만 일부학교에선 외부프로그램에 따른 강사 인건비와 통학버스 운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용된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도의회 교육위원 내부자료).

더구나 막대한 지원으로 일반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한 종합평가보고서는 향후에도 이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제주일보,08.11.12).

2008년 12월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보고서'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행·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한 한다며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보면 교원 확보 및 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행정실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우수강사, 업무보조원 등의 인력지원과 학생의 수강료 지원 등이다. 또한 교사의 외국어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정기연수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기존 자율학교의 유지를 전제로 새로운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양성언 교육감 주제로 열린 도교육청 간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강사 인력 지원과 학생 수강료 지원 등에 대해선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일정액의 수익자부담원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 및 학생 규모 등에 관계없이 학교당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개선해 차후에는 학교규모와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별 사업계획서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시에는 통학버스운영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율학교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제2기 자율학교 때에는 예산이 1/4수준으로 삭감됨으로 인해 특성화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일부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제1기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당 2억원을 지원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외부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았고 강사 인건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제2기 출발 당시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던 특성화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 되어 학부모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불신을 품게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원래 학교로의 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

대흘초등학교의 경우 버스 2대로 시내권에 살고 있는 60명의 학생을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만 연간 4천여만원에 달한다. 결국 대흘초는 자율학교로 재지정시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차량운행 예산에 지원금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흘초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차량운행비를 학생 부담으로 돌리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정책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라일보,08.12.25).

대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제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자율학교를 떠난 학부모가 드리는 글'을 올리며 자율학교 정책을 비판했다(제주의 소리,09.03.04).

이 글에서 학부모들은 '제주도교육청은 2년전 특성화교과와 방과후 학교,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대흘초등학교의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운영 계획을 허가했고, 당시 부교육감은 제주도학생문화원에 모인 인화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같은 약속을 했었다'며 '약속을 믿고 대흘초등학교로 전학 간 65명의 아이들은 2년간 순박하고 해맑은 농촌 아이들과 어울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흘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 연간 2억원씩 지원하던 자율학교 운영비를 5천만원으로 줄이고 방과후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도 수이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학생들을 모집할 때부터 운영기간은 최고 4년까지이며 2년이 끝나 다시 지정 될 경우 운영비 지원금은 5천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면서 이 같은 상실감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자율학교 정책으로 인해 일어섰던 대흘초등학교는 이제 다시 고난의 가시밭길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재정은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학교에 비해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자율학교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하여 국가시책사업 등 주요사업비에 대한 추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가 출범 2년만에 예산을 학교당 4분의 1로 줄이면서 2년만에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2009년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기존 9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로 대폭 확대하면서 각 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새로 신규로 지정된 학교 16개 학교는 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반발한 대흘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제주시 동광초등학교나 인화초등학교로 전학시키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의 소리,09.03.04).

급조된 주먹구구식 자율학교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대흘초등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전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제주시권에서 대흥초등학교로 간 신입생은 4명에 불과하지만 반면 개학도 하기 전에 제주시권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온 학생은 벌써 10명을 넘어섰으며 이렇게 제주시권 학교의 전학생이 줄어들면 대흥초등학교 전체 학생수는 자율학교 운영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초등학교는 예산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교과전담 교사와 원어민 영어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3월 18일 강남진 교육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예산심의·의결한 i-좋은 학교 예산 34억원 중 20억원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i-좋은 학교 정책기조의 변화를 집중 추궁했다(제주의소리,09.03.18). 강 의원은 '교육당국은 그간 재정이 과잉 지원됐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4분의 1로 일괄 삭감해버렸고, 지난 2년간 i-좋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입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 속에서 이뤄졌던 과정들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결국 빈껍데기 자율학교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일선에선 예산 삭감보다는 학교예산과는 달리 학교장이 자율학교 운영비 집행에 있어 제약이 따르고 있어(도의회 교육위원 내부자료),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단위학교의 계획과 책임 하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인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예산 편성 및 활용에 대해 도교육청의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날 때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은 제1기 운영시 구비되어 있지만, 기자재 및 학교 시설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학버스 운행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지적이 되었다가 결국 제2기 예산에서는 자율학교 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 학교마다 필요한 항목이 다르지만 결국 교재 구입비, 강사 인건비, 원어민교사 연구수당, 홍보비, 업무추진비등으로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사항으로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의 경우는 불가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 특근비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로 보조된다고나 할까요. 결국 예산이 많거나 적음의 문제보다는 집행에 대한 자율권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교사)

"특성화 프로그램은 예산에 의해 개설,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며, 예산적 지원이 힘든 경우, 이를 나누어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의 보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D교사)

"행정적 편의나 보여지는 것에 목적을 둔 자율학교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적·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F교사)

"꾸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와 그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자율학교를 원한다면 정말 안정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G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설비 및 시설의 확충,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임용 등 재정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학교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약 60~70%를 상회하고 있어서 시설비 채원 마련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



을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자율학교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현실화되는 개선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자율학교 운영 평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상 내부평가이지 종합평가가 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제민일보,08.10.08).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목표·성과지표 협약에 따라 2008년 5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단(종합평가단)을 구성,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종합평가단을 보면, 교육전문직 4명, 도청공무원 1명, 지역교육청·학교장 3명, 대학교수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외부인사가 1명만 이뤄지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종합평가의 객관성,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9개교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2기 시범학교 선정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한라일보,08.11.24일).

고점유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9개 시범학교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박2일 동안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평가지표를 만들었지만 평가에 앞서 학교장에게 이러한 지표들을 모두 공개했다'면서 '종합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9개 시범학교의 평가 결과가 거의 비슷했으며, 이는 사전에 시험지를 나눠준 뒤 평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됐겠냐'라는 문제제기뿐 아니라, '시범학교에 대한 평가를 단순 수치로 나타낸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각 학교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 수치로만 학교를 줄 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제시한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는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의 모습과 거리가 멀고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4월 17일 좌남수 제주도의원은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있어 교과과정의 부분적 선택을 제외하고는 기존 일반 학교와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제주의 소리,09.04.17).

제주형 자율학교의 재지정 및 확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종합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쟁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통해 평가지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가 질적·양적 평가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최종 보고서 기술 시, 평가자의 개인별 주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 자료를 근거한 질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내용에 대한 대범주 및 소범주별 분류와 소범주를 다시 하위 평가요소로 상세화한 후, 하위요소별 평가척도를 제시한 평가틀의 개발과 적용을 해야 한다. 최하위 요소별로 부여한 평정점을 근거로 평가·기술하고, 하위 요소별 평정점을 합한 상위 범주별 평정점을 근거로 평가·기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이종재,2002:109).



### 3. 지원체제 측면

#### 가. 교장의 인사 자율성 확대

2009년 5월 1일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더불어 교원인사의 자율화 관련 세부추진방안이 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며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다는 내용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로 규정된 사항이 일반학교로 까지 확대 추진된다면 교사초빙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의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등을 법령상 권한으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교원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은 초빙교장제의 취지를 더욱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5개 초등학교의 경우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없다. 고전(2008:205 -206)에 의하면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교육청 중심으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고, 학교 지정 문제를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 및 교육청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장의 내부인사권 역시, 학교의 효과적 운영과 직결되는 권한이나 학교장의 자질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양성과정이 없어서 효과적인 학교장의 학교 조직 및 지도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근무교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

"학교장에 대한 자율권이 많아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든가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공모라든지 초빙교장에 대해 뜻을 같이한 동료교사들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A교사)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율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교장은 개념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돈을 1억을 주건 2억을 주거나 교사들의 사기나 근무 만족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B교사)

"교장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통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친화와 단결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유관기관, 지역교육청과의 원활한 의견 조율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슈퍼맨이 되어야 하나 봅니다."(D교사)

"자율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율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자리가 잘 자리매김 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F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학교에서는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 축적,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이 이동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도 자주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자율성은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선발, 배치 및 직무의 규정에 관한 자율성을 의미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원 인사 제도는 미흡한 편이다. 공립학교인 초등학교 교원인 경우, 순환근무제가 적용되므로 교원 이동으로 인하여 자율학교 운영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단기간 근무로는 지속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추진될 수 없으므로 제주형 자율학교 교사에 한해 순환근무제 작용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근무 연한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특히 전문교사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 계획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 강사 수급을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인력 은행을 운영하고 이를 수시로 교육하여 학교에 적절한 인력 제공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정기 인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전출이나 전입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전출을 가게 되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율학교 근무 교원을 초빙제도로 바꾸거나 장기 근무 희망자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D교사)

"자율학교의 시행 초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수소문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학교장의 추천으로 원어민 교사가 도교육청에서 임용되어 우리학교로 배정되었으나 자질에 문제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문 강사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서 교수법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생활지도면에서 우리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강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힘들었어요."(E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의 경우 업무 및 수업 부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지정 연구학교 가산점 및 자율학교에 필요한 장학 자료(교과용 도서 포함) 개발 교원 등에 한정하여 선택가산점<sup>26)</sup>을 1년 1자료로 0.120점 부여받고 있지만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수 증배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운영

2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우리 교육청 예규 제3조 9 다)에 근거한 것이나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로 제2기 시행부터는 삭제되었음.

하더라도 담임과의 팀티칭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비하여 최소 3-4시간은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학생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업무처리가 학생들 귀가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수 증배에 따른 인적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하겠고 이왕이면 교사들로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A교사)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유인책이 지금보다 더 커야한다고 생각해요."(C교사)

"영어몰입 또는 일부 특성화 교육과정의 담임교사 진행으로 수업에 대해 정말 부담이 많습니다. 더구나 기초·기본 학력 신장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가중치는 큼니다. 더구나 각종 자율학교 평가와 그 결과 처리, 특화 프로그램 진행상황 점검 등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신생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제공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D교사)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사회의 인식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교육의 질을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들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교직원들의 인사 측면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할 것이다.

#### 나. 교사 연수의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각종의 규제를 제거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고 내부 구성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교육현실을 고려해 신청학교가 자율학교의 취지 및 의도를 충분히 파악·이해하고 운영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정책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 학교의 자발적인 요청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혹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이해 부족, 준비 부족으로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학교운영계획이나 학교현장의 내용이 제주형 자율학교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학교현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학교가 교육활동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며, 또한 학교운영계획으로 구체화되어 학교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을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제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부 교사들만 참여하여 진행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현장에 나타난 제주형 자율학교 기본 정신이라든지 특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학교 지정 첫째인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 자율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시행 초기 저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실무담당자들이 막연하게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학년이 시작되었고 자율학교에 대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제대로 된 지침이나 내용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만 하니 답답했어요. 결국 담당장학사가 교체되고 실무담당자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A교사)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되고나서 학교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학년교육과정이 수립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5월이 되어서야 교육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3월부터 프로그램이 투입되고 있었지만 계획서의 내용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실시했고 결국 다음해에 대폭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전폭적으로 믿어준 덕분에 학생들과의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이 덜했을 것입니다."(E교사)

"제주형 자율학교 교사들이 연수를 함께 받은 적은 없어요. 몇몇 실무자들이 1박2일이나 1일 정도의 워크숍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간 컨설팅으로 2-3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긴 어려워요.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우에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가 있을 뿐이지요."(G교사)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지정 당시 4개 학교의 전 교직원들은 한 달 동안 합숙의 형태로 학교현장의 제정부터 학교규칙, 교육과정의 편성 등을 아우르는 교육부 주관의 연수가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기에는 교육청은 물론 학교 자체 내에서의 연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2007년 6월 도교육청주관으로 실무담당자를 포함한 교장, 교무, 행정실장 관련 워크숍을 시작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과 학교 자체 내 연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전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여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근무한 교사의 경우 제주형 자율학교 전반의 취지나 학교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새로 전입했거나 신규 발령을 받은 경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측에서 따로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발령을 받기도 전에 연수를 시킬 수는 없으니 도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자로 발령받게 되는 교사들을 따로 연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A교사)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교재 개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교 차원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결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다. 학교 시설의 정비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 집행에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에 적합한 예산 편성·집행을 위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인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예산 우선 편성·집행하며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집행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나 강사료 지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료운영 등의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풍족한 편이었으나 새로운 교수 학습기기를 구입한다거나 노후된 학교 시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나 첨단 교수학습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이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도심 공동화 학교나 도시에 비해 낙후된 읍·면 지구의 소규모 학교 시설의 정비는 현직 교원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2년째로 들어섰을 무렵에는 학급당 학생수 기준 30명이었으나 새로운 전학생으로 인해 초과되어 학급을 증설되었을 경우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이 일반 교실로 변경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낡은 시설을 보수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영어체험실의 경우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과 시청에서의 특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율학교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A교사)

“갑자기 늘어난 신입생으로 학급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으나 결국 총 학급수 제한에 묶여 학급 정원이 35명이 넘는 학년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많은 예산으로 만들었던 특별실이 일반 교실로 바뀔 수밖에 없기도 했구요.”(D교사)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2년이나 3년으로 수료할 수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만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교수 학습기기를 통한 수업을 받고 아름답고 쾌적한 학교 시설 속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 희망이 넘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수준의 우수한 모델 학교로 창출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원어민 교사의 확대 배치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의 행·재정적 지원,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혁신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 분석의 방법과 문헌의 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근무 교원 중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2007년부터 제주도에 실시했던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은 학교현장의 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특례, 특성화 프로그램 측면, 성과지표, 학교장과 교육감과의 성과협약으로 나타났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어, 사회, 도덕이외의 교과목의 수업시수 가감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가장 핵심부분으로 일반 학교와의 차별화를 위해 주당 수업시수를 2 ~ 4시간 증배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 사항을 살려 학교장의 재량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성과달성을 위해 국무총리와 도지사·교육감과의 성과협약(MOU)을 체결된 것을 바탕으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2007년 4월 교육감과 학교장과의 성과협약이 체결되었다.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는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그에 따른 책무성,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점검하여 학교가 스스로 하고자 한 것을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법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의 제주형 자율학교의 쟁점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학교현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교육청 자율학교 표준안대로 학교장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 학교별로 큰 특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정규교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일반학교와 차별성을 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시수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시수는

늘어났지만, 재량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치중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화 된 교사가 적어 핵심적인 부분을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지역 학교급의 산발적 지정 운영으로 초·중·고의 연계성 있는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며 대다수 학생이 단일 학교급에 한해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고 있음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우수강사 인력 지원과 학생 수강료 지원 등에 대해선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일정액의 수익자부담원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과 학교 및 학생 규모 등에 관계없이 학교당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개선해 차후에는 학교규모와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별 사업계획서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시에는 통학버스운영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율학교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제2기 자율학교 때에는 예산이 1/4수준으로 삭감됨으로 인해 특성화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일부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제1기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사실상 내부평가이지 종합평가가 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8년 5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단(종합평가단)을 보면, 교육전문직 4명, 도청공무원 1명, 지역교육청·학교장 3명, 대학교수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외부인사가 1명만 이뤄지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종합평가의 객관성,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징과 쟁점을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교 자율성 보장 및 특례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한 법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만한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러한 권한들을 다른 학교들보다 먼저 부여받고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학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학교보다 한발 앞서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러한 자율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학교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이러한 취지를 계속 살려가려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허용되는 자율권의 범위도 지속적,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통한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은 자율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권한이

지만, 대부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감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자율학교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현실화되는 개선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장 인사 자율권, 교원 연수 강화, 및 학교 시설 정비를 포함하는 지원체제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7월 11일 교과부에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자율화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수 있어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만이 가지는 특례 적용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입법취지에 맞는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대부분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어교육은 1~2년 단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으로 장기적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정책이 요구되며 도내 전 학교 확대를 위해서라도 적정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어발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자기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예산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형 자율학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진정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정해진 자율권은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자율권을 교육청의 지침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두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신청한 학교장과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자율학교 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율학교 선정은 전문성과 형평성의 논의가 생길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고자 하는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지 및 학교현장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잣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교육학자나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향과 맞물리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사항이 제주도의 특수성에 맞게 잘 정립되어 새로운 자율학교 유형으로 타시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전(2008),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초등교육연구**, **21(3)**. 초등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 운영 종합평가 보고서.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개방형 자율학교 기본계획 시안.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
- 김민조(2003),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현장학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3)**.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성열(1999), “학교자율책임경영제의 확립”. **새교육**. 한국교원신문사(5월).
- 김성열(2003a),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외(2001),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원찬 (2006), 자율학교 운영 국제 비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현진(2006), 한국의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태(2000), “차터스쿨(CharterSchools)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8(3)**.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세훈(2003), 한국의 자율학교와 미국의 차터스쿨 비교 연구. **교육학연구** **41(4)**.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종렬(2003), “지식기반 학교경영 개념모형 정립”, **교육행정학연구** **21(3)**. 한국교육행정학회.
- 배장오(2002), “자율학교 평가결과 :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학교 종합평가 결과보고와 정책제언-자율학교. 학교모형연구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오영세(2002),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우 외(2002), “학교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개편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석순(2009), “자율학교 전환과정의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재(2000),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국의 교육정책.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 이종태 외(2000),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2002), 학교종합평가 결과보고와 정책제언-자율학교 · 학교모형연구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2-32.
- 이종태, 강영혜, 정광희(2000),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0-38.
- 이진철(2007),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진철(2008), “자율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교육연구** **22**.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연기(1997), 단위학교 책임운영제의 본질과 발전과제. **한국교육** **24(2)**. 한국교육개발원.
- 유균상 외(2002a), 자율학교 학교종합평가 편람. 교육기관 평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유근상 외(2002b), KEDI 학교종합평가안내 자율학교 평가위원 연수교재.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김혜숙,김홍주(1996), 초·중등학교 기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외(2000), 자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외(2001), 자율학교 시범운영 결과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진동섭 외(2004),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CR2004-9-15.

최금진,배장오(2003),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41(2). 한국교육행정학회.

최양미(2003),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홍현성(2006), “교육자치와 자율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6).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지정 · 운영 세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0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08). 2008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08). 2008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지정 · 운영 세부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종합평가 지표 편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보고서

2008학년도 광령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광양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대흥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서귀포초등학교 교육과정

2008학년도 제주북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언론재단 <http://www.kinds.co.kr>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Plan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 Focusing on the First Model Elementary School -**

**Hyun, Soon A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Jeon**

Since 2007, the Jeju Self-Governing school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superior model school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beautiful prosperous Jeju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hopeful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demonstratively run for a drastic grant of Self-Governing right on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use of textbook, and increase and arrangement of native teachers, fo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curriculum composition and operating cost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for incentive system regarding to teachers in the school. Then, this school was synthetically evaluated to set up new directions hereo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grope for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second Jeju Self-Governing school based on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first school operated since 2007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ticle 61 of the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and Article 105 of Enforcement Decree and with Article 186 of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rticle 29~31

of Enforcement Decree.

To conduct this study, it firstly examined the basis of policy to promote the school self-regulation, type of Self-Governing school, and implications of foreign cases. Second, based on introductory background and legislative basi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it investigated and analyzed enactment of the school constitution, exception for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the aspects of specialized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by performance indicators. Third, in order to examine an issue on the regulation related to school self-regulation and application range of the special act in its legislative aspects, to inspect an issue on curriculum, finances and evaluation in its operational aspects, and to supplement poor literature and scanty methods of literature analysis for other supporting system, it selected teachers from 5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actually applied the policy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for interview.

As the resul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improvement plans for legislative aspects through ensuring school self-regulation and expanding application range of exception. Second, it is required to set improvement strategies for operational aspects through Self-Governing composition of curriculum and finances, and specialized evaluation system. Third, it needs to improve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Self-Governing right for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teacher training enhancement, and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ies.

It shall make a genuine Jeju Self-Governing school which establishes a long-term education policy to enhance its own specialized program not depending on the budget and is operated with the teachers experienced Jeju Self-Governing school.

[부록1]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 서류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서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장명	교감명
주 제				
자율학교 운영기간				
구 분	내 용			
자율학교 운영 목적				
자율학교 운영 방향, 창의적 교 육과정 및 특성화프로 그램 내용	1-2쪽 분량으로 요약 정리			
향후 발전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008. .

○○○ 학교장

직인

## 학 교 현 황

※ 학교현장 1page에 작성

- 학교명 :
- 주소(우편번호                    ☎                    ,E-mail :                    )
- 학교현황

학생 현황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인원			비고
교원 현황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계
				남	여		
학교 연혁	※ 설립부터 최근까지 주요 연혁 기록(학급수 변화 내용 포함)						
학교장 및 교사	학교장 명		연령		본교 재직기간		
	※소속 교원 전국단위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 등						
학운위 · 학부모 · 교원 의견	※자율학교 관련 학운위 · 학부모 · 교원 의견						

2008. . .

○○○ 학교장

직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단위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에 참여하는데 대한 논의 결과(심의, 의결내용)를 정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참석 위원
- 4) 불참 위원
- 5) 회의내용(요약)

- 
- 

2008년 월 일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 학교장 자율학교 경영계획

학교명		교장명
학교장 경영 의지		
제주형 자율학교 경영 계획	(1-3쪽 분량)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용, 학사 관리, 인사관리, 재정운영, 후생복지 지원 등 학교 경영 계획 요약 기술	

2008. . .

○○○ 학교장

직인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심사표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심사관점			배 점											
			10	9	8	7	6	5	4	3	2	1		
1. 제주형 자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경영자의 학교경영의지 및 경영계획은 분명한가?														
2.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지가 확고한가? (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자율학교 운영 의지)														
3. 학교현장에 나타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목표가 명료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3. 학교현장에 나타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차별화되고 창의적인가?														
4. 학교현장에 자율권의 범위가 명시되고, 우리 학교만이 갖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가?														
5.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되는 교교인사관리 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6.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 및 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7. 공동화학교·도심인근소규모학교·읍면지역의 학교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는가?														
8. 창의적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걸맞는 재정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9. 향후 적정학급·학생 수용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10. 향후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발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계														

2008. 12. .

소속 :

직위 :

성명 :

[부록2]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지표 편람

(2008.0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평가지표 체계

□ 성과목표

-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 성과지표(1) : 학교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보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소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학교경영 자율성· 책임성 확보	창의적이고 특화된 학교경영	학교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현장은 바람직하게 제정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학부모·지역사회 특성 및 요구 반영</li> <li>타당성</li> <li>실현가능성</li> </ul>
		학교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현장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의 경영 의지</li> <li>학교 경영 평가 실적</li> <li>각종 위원회 활동</li> <li>제규정 정비·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li> <li>장학자료 및 학습자료 개발·활용</li> <li>각종 연수활동, 자율장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운영위원회 활동</li> <li>인적·물적 자원 활용 실적</li> <li>학교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교육 활동</li> </ul>
		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li> <li>특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li> <li>우수 강사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한 노력</li> </ul>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활동 홍보 계획</li> <li>교육활동 홍보 실적</li> </ul>	
	특례 활용	자율 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법·시행령에서 제시된 특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의 자율운영</li> <li>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li> <li>국내외 교재 선정 및 활용</li> <li>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 여부</li> </ul>
만족 도	평가 지표 확정 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li> <li>학부모</li> <li>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이고 특화된 학교경영 만족도</li> <li>특례활용 만족도</li> </ul>	

□ 성과지표(2) :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소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 자율 편성 · 운영	학교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현장의 목표와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과목, 영역, 시간증배 등)</li> </ul>
		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 높은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창의적 프로그램 계획·실적</li> <li>인성·체험중심 프로그램 계획·실적</li> <li>우수 강사 확보 및 관리</li> <li>교육과정 질 관리</li> </ul>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화·세계화를 위한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화를 위한 특화 교육 내용과 운영</li> <li>세계화를 위한 특화 교육 내용과 운영</li> </ul>
	체계적인 학력 관리	자율 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화되고 실현 가능한 학력향상 계획 및 실적</li> <li>학업 성적 관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li> <li>학업성취 현황 가정통신 등 학부모와의 연계 및 상담활동</li> <li>내실 있는 학력평가 결과 활용</li> <li>학생의 적성과 욕구를 반영한 진학 및 진로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학력 갖추기 책임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습부진학생 관리</li> <li>제학력 갖추기 관리</li> </ul>
	만족 도	평가 지표 확정 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li> <li>학부모</li> <li>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자율편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li> <li>체계적인 학력 관리에 대한 만족도</li> </ul>

□ 성과지표(3) :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소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지역 균형발전	도심 공동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공동화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물 제작·활용</li> <li>과대학교·과밀학급 방문 설명회</li> <li>학부모 대상 홍보 및 설명회</li> <li>학생 진출입 현황</li> </ul>
		및 인근 소규모 학교 균형발전		
	교육재정 편성·운용	교육재정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재정은 학교현장 실현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운용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학습활동 등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li> <li>선진기자재 확보 및 활용 실적</li> <li>교단 지원 자료 확보</li> <li>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li> <li>외부재원 유치 실적</li> </ul>
	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가 교육복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자치활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li> <li>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li> </ul>	
	만족도	평가 지표 확정 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li> <li>학부모</li> <li>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간 교육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만족도</li> </ul>

### [부록3]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협약서

##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성과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장(이하 “자율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자율학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과 목표”라 함은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2. “성과 지표”라 함은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3. “성과 평가”라 함은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성과 지표에 따라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어 외에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기본책무)** 교육감과 자율학교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이 협약에 의한 성과 목표 및 성과 평가를 상호 존중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장 성과관리

**제4조(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 교육감은 다음 연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12월 말까지 자율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연도인 2007년도에 대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지침은 붙임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로 같음한다.

**제5조(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설정)** ① 자율학교의 장은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해당부서의 과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과 지표는 평가 기간 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급적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변경(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변경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의 제출)** 자율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 목표 달성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단)**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성과평가단은 교직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8조(성과 평가의 실시)** ①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매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평가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7조에 의한 성과평가단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성과 평가 결과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은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평가 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을 타나낸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정·보완, 교장·교감 등 교직원 업무실적 평가 반영, 자율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한 자율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학교의 장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협약의 개정 등

**제11조(협약의 개정)**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학교 운영 경비를 지원하되, 학교 규모, 프로그램 내용,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해석)**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작성 지침”에 따른다.

붙임 :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예시안) 1부.

2007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학교장

( 서명 ) ( 서명 )